



# GCF 능력배양사업 분석 및 KOICA 기후변화사업 적용가능성 연구

2016. 10

GCF 능력배양사업 분석 및  
KOICA 기후변화사업 적용가능성 연구

2016. 10.

KOICA

## 저자

---

### 홍 은 경

- 주요 경력

- ▷ KOICA ODA 연구팀 (현)
- ▷ 알래스카 주립대학교 기후변화 정책 및 평가 박사, Ph. D.  
(Interdisciplinary Ph. D. in Climate Change Policy and Assessment)
- ▷ Alaska Center for Climate Assessment and Policy 연구원
- ▷ Resilience and Adaptation Program 수료/ 알래스카 주립대학교

- 주요 연구실적

- ▷ 환경 ODA 사업으로의 녹색기후기금 능력배양사업, 연구보고서, 2014, KOICA
- ▷ Enhancing Readiness Programs for the Green Climate Fund, KOICA Working paper, 2014, KOICA
- ▷ 한국 ODA 중점협력국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연구보고서, 2014, KOICA
- ▷ Post-2015 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 분야 ODA 지원방안, 연구보고서, 2013, KOICA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KOICA 홈페이지(<http://www.koica.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목 차

|                                |    |
|--------------------------------|----|
| 1. 서론                          | 1  |
| 1.1. 연구의 배경                    | 1  |
| 1.2. 연구의 범위 및 목적               | 3  |
| 2. GCF 능력배양사업                  | 4  |
| 2.1. GCF 능력배양사업 개요             | 4  |
| 2.2. GCF 능력배양사업 현황 및 결과        | 7  |
| 3. GCF 능력배양사업 분석               | 21 |
| 3.1. 승인 된 GCF 능력배양사업 내용분석      | 21 |
| 3.2. 승인 된 GCF 능력배양사업 전달파트너별 분류 | 22 |
| 4. KOICA의 GCF 능력배양사업 적용 방안     | 24 |
| 4.1. KOICA의 GCF 관련 활동          | 24 |
| 4.2. 향후 KOICA 기후변화사업 방향 제시     | 26 |
| 5. 결론                          | 34 |
| 참고문헌                           | 36 |
| [부록]                           | 38 |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하 “GCF”)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통해 저탄소, 기후탄성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발전경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후재원이다. GCF는 2010년 제 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6)에서 설립이 결정되었으며 유엔기후변화협약 재정체계 운영기구로서 앞으로 국제 기후재원의 상당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GCF 사무국은 GCF 이사회에 의해 관리되는데 GCF의 이사회는 수원국 주인의식(country ownership)과 수원국 주도 접근 방식(country-driven approach)을 GCF의 주요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GCF는 기금에 대한 개도국의 직접접근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개도국이 자국 내에 현지 GCF 이행기구(Implementing Entity, 이하 “IE”)를 선정하여 그 기관이 국제기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기금을 수령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도국은 수원국 주도 접근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국가지정기구(National Designated Authority, 이하 “NDA”)를 지정하는 권한을 갖게 되는데 이 NDA는 현지 대행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NDA는 기금에 대한 직접접근방식을 이행 할 국가이행기구(National Implementing Entity, 이하 “NIE”)를 제안하거나 국가 기후전략 및 계획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추천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013년 제 3차 GCF 이사회 이후, 2016년 8월 지금까지 141개 개도국들이 NDA를 지정하고 사무국에 통보하였다<sup>1)</sup>. 이처럼 많은 개도국들이 짧은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NDA를 지정·통보한 것은 그들의 직접접근과 이를 통한 기후재원의 접근에 대한 관심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녹색기금에 직접 접근하기 위해서 NIE는 사무국이 요구하는 수탁기준(fiduciary standards), 환경/사회세이프가드(Environmental and Social Safeguards, 이하 “ESS”)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는 개도국이 스스로 역량을 갖추고 있

1) 2016년 8월 3일 기준, 141개 국가에서 NDA를 지정하였음. 더 자세한 것은 <부록 1> 참조

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직접접근의 개념 및 절차 자체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다. 이에 개도국의 역량을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GCF로의 직접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배양을 위한 지원(Readiness and Preparatory Support)의 필요성이 2013년 제 3차 GCF 이사회에서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능력배양사업(Readiness Programme)은 개도국 및 신흥경제국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국제기후 금융에 접근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그 후 여러 번의 이사회 논의 과정을 통해 사업의 윤곽이 갖추어지고 사업이 시행되었다.

2016년 5월 기준으로, GCF 사무국은 106개의 국가에서 능력배양에 대한 요청(requests)을 받았으며, 75개 나라에서 능력배양사업 제안서(proposals)를 받아 이 중 49개 나라에서 제출한 능력배양사업 제안을 승인한 상태이다(GCF, 2016)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참조). 이처럼 많은 개도국들이 적극적으로 능력배양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녹색기후기금으로의 직접접근 형태가 이들에게는 매력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능력배양사업은 원칙적으로 무상지원의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개도국의 능력배양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CF의 능력배양사업에 대한 사업은 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능력배양사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 사이에 불균형이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물은 KOICA의 기후변화사업으로 기후변화 능력배양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부족한 능력배양사업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승인된 GCF 능력배양사업의 내용과 과거 KOICA 기후변화사업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KOICA 기후변화사업 방향을 논하려고 한다.

지난 2015년 12월, 파리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새로운 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합의문(Paris Agreement)<sup>2)</sup>이 체결됨에 따라 기후변화 국제시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며 더

---

2)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파리 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지구적 장기목표 하에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며, 5년 주기 이행점검을 통해 점차 노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리 협정은 또한,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국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재원 조성 관련,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여타 국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협정은 기후행동 및 지원에 대한 투명성 체제를 강화하면서도 각국의 능력을 감안하여 유연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 협정의 이행 및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불어 국제사회에서의 GCF의 역할 역시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GCF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향후 KOICA 기후환경사업 역시 GCF의 사업방향을 고려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KOICA는 GCF Readiness Coordination Mechanism(이하 “GCF 능력배양사업협의회”)회의에 참석하는 등 GCF 능력배양관련 중요 논의 및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하여 왔는데, GCF 능력배양사업과 KOICA 사업과의 접점을 찾는 노력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상기 이슈의 논의를 위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GCF의 능력배양사업에 대한 개요 및 현황을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기승인된 GCF 능력배양사업을 분석하며 제 4장에서는 3장을 통해 파악된 GCF의 능력배양사업의 특징을 통해 KOICA 기후변화사업으로 능력배양사업의 적용방안에 대해 논하고, 동시에 향후 KOICA 기후변화사업 방향성을 제시한다. 마지막 5장은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고 KOICA 기후변화사업으로 능력배양사업의 적용을 통해 갖게 되는 의의를 설명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목적

본 연구는 (1) 승인된 GCF 능력배양사업의 내용 파악을 통해 GCF 능력배양사업 성격을 파악하고, (2) 또한 이를 통해 KOICA 기후환경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3) 궁극적으로 GCF 능력배양사업과 KOICA 기후변화사업과의 접점을 모색하여 향후 KOICA 기후변화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승인된 49개 국가 능력배양사업의 살펴보아 GCF가 지난 몇 년 간 실시하였던 능력배양사업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와 동시에 2005년 이후의 KOICA 기후변화사업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특성을 파악한 뒤 앞으로 KOICA 기후변화사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동시에 이들의 능력배양사업으로 전환 및 활용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2. GCF 능력배양사업

### 2.1. GCF 능력배양사업 개요<sup>3)</sup>

능력배양사업은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국제기후 금융에 접근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이는 기금의 접근이 취약한 개도국에게 저탄소 및 기후변화 복원력이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기금으로의 직접접근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홍은경, 2014). 능력배양사업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으나 GCF가 제공하는 능력배양사업과 사전준비 지원(readiness and preparatory support)은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GCF, 2013).

- (i) 저탄소배출, 기후 회복탄력적인 개발 전략 및 계획에 대한 준비 및 강화
- (ii) 국가 조정을 포함한 수혜국 내 기관의 역량 강화
- (iii) 수원국들이 기금의 신탁 규정과 기준 및 환경/사회 세이프가드를 충족시키도록 도와 기금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함

제 8차 GCF 이사회(2014,10)는 5개의 분야 초기 능력배양지원에 대해 5개의 분야를 승인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초기 능력배양지원 다섯 가지 활동분야

| 활동                                                      | 내용                                                                               |
|---------------------------------------------------------|----------------------------------------------------------------------------------|
| 활동1. NDA 혹은 국가접촉창구<br>(Focal Points, 이하"FP")<br>설립 및 강화 | NDA 혹은 FP가 지역, 국가, 준정부국가, 시민사회가 젠더 민감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사무국의 우선순위를 고려하면서 서로 교류하는 것을 지원 |
| 활동2. 전략적 프레임워크                                          | GCF와 소통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략 및 계획에 기반하여 국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포함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개발 지원             |
| 활동3. 중개자 및 이행기구 선정 및<br>그들의 승인 지원                       | NDA 혹은 국가접촉창구와 협력하여 급행승인을 포함하여, 지역, 국가, 준국가 기관이 승인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원                   |

3) GCF 능력배양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홍은경(20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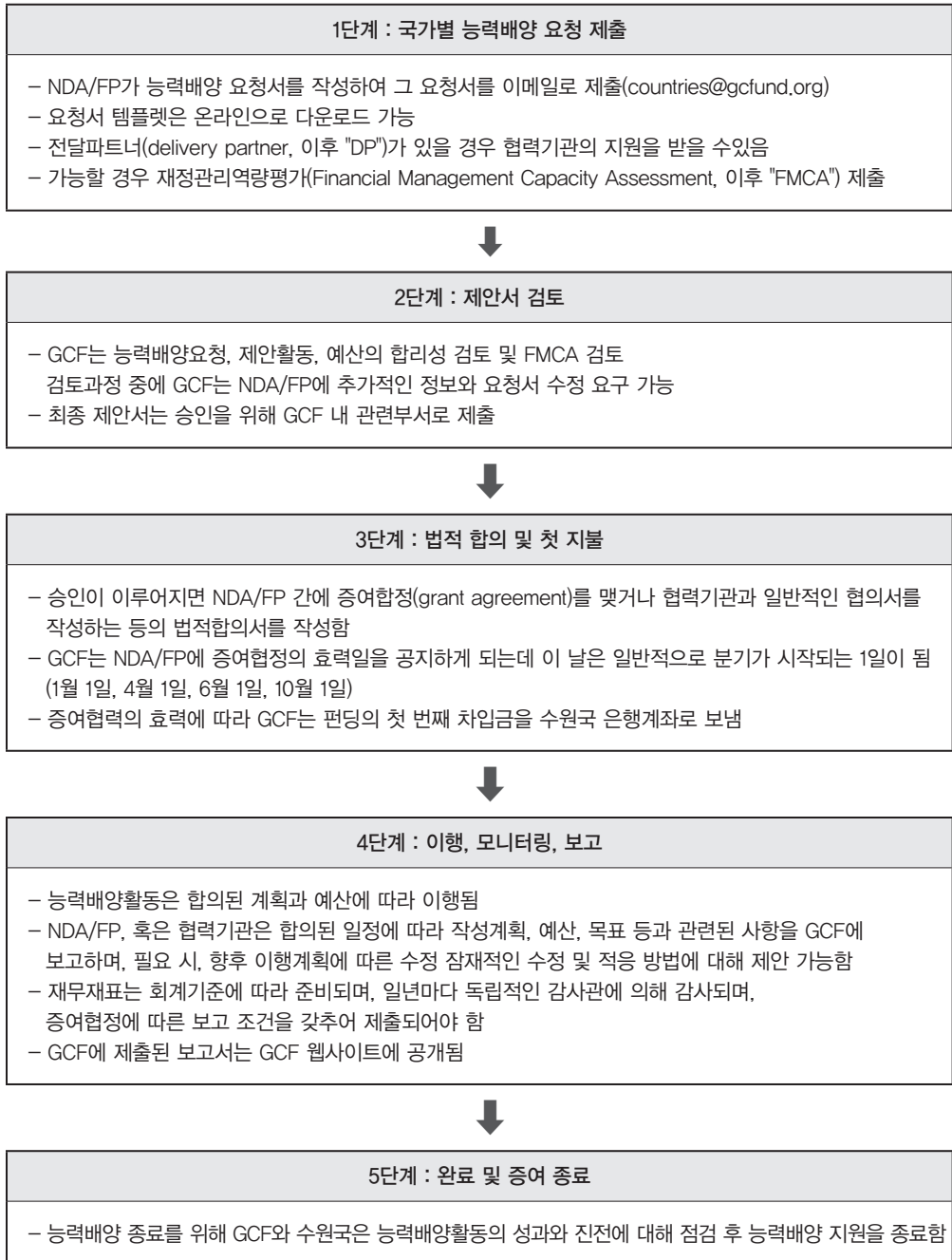
|                                 |                                                                                              |
|---------------------------------|----------------------------------------------------------------------------------------------|
| 활동4.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제안<br>파이프라인 구축 | GCF의 목적과 초기투자프레임워크와 부합하고 GCF의 저탄소, 기후탄성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제안 파이프라인 구축 |
| 활동5. 정보공유, 경험공유 및 학습            | NDA/FP, 다른 주요 이해당사자간 세부원칙과 기회에 관한 의식 고취를 위한 지역워크숍 개최, 이를 통해 경험 교환과 교훈을 학습의 기회로 삼음            |

출처: GCF (2015)

능력배양사업은 모든 개발도상국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지원은 각 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반영되어 지원된다. 능력배양프로그램 신청은 NDA/FP가 GCF 사무국 앞으로 직접 해야 한다. 능력배양 자원분배는 최빈국, 군소도서국가, 아프리카 국가의 급박한 요구를 우선 반영하기로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GCF, 2013), 최소 능력배양 지원의 50% 이상을 이들에게 지원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GCF, 2016). 능력배양사업 지원을 받게 되는 각각의 나라는 1년 동안(1월-12월까지) 최대 100만불까지 받을 수 있으며(GCF, 2016), 이 상한선 안에서 NDA와 FP는 NDA와 FP 설립을 위해 매해 30만불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 상한선 이외에 추가적으로 국가적응계획 수립 및 다른 적응계획 절차를 위하여 국가별로 300백만불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지원 기간은 국가의 수요에 근거하여 산출된다(GCF, 2016e).

능력배양사업의 진행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i) 1단계: 국가별 능력배양 요청 제출, ii) 2단계: 제안서 검토, iii) 3단계: 법적 합의 및 첫 지불, iv) 4단계: 이행, 모니터링, 보고, v) 5단계: 완료 및 증여 종료’로 볼 수 있다. 아래 <그림 1>은 진행절차 단계별 내용과 해당 주체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그림 1〉 능력배양사업 진행절차



출처: GCF (2016e)

## 2.2. GCF 능력배양사업 현황<sup>4)</sup> 및 결과

2016년 5월 기준으로 GCF 사무국은 106개의 국가에서 능력배양에 대한 요청(requests)을 받았다. 이 중 75개 나라가 능력배양사업 제안서(proposals)을 제출하였는데 이 중 GCF 사무국은 이 75개 나라 중 49개 나라에서 제출한 능력배양사업 제안을 승인하였다. 승인된 49개 사업은 활동 5를 제외한 GCF 능력배양 활동 중 1-4을 지원하는 것이며 이는 총 1300 만불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표 2〉 참조,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참조). 승인된 49개 나라 중 34개 나라는 군소도서 개발국, 최빈국, 아프리카 국가들로 이는 전체의 69.3%에 해당하는 숫자이며, 이는 최소 능력배양 지원의 50% 이상을 군소도서 개발국, 최빈국, 아프리카 국가에게 지원하겠다고 한 GCF 목표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앞서 〈표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활동 1은 개도국 NDA와 FP의 제도적 능력 강화에 주력하며, 활동 2는 GCF와 연계한 전략적프레임워크 개발에 주력한다. 활동 3은 NDA 혹은 FP가 지명한 지역, 국가, 준국가조직이 GCF 승인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활동 4와 사업준비금융(Project Preparation Facility, 이하 “PPF”)은 각 국가의 파이프라인 형성(build)을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sup>5)</sup>. 2016년 3월, 12차 이사회는 최초의 PPF 승인으로 개도국 인증기구가 양질의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르완다에 무상증여의 형태로 15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을 결정하였다.

---

4) 현황은 GCF (2016c)를 요약·정리한 것임

5) 사업준비금융은 GCF에만 있는 유일한 지원방식은 아니며 이미 기후재원을 지원하는 다른 국제기구들이 개도국의 기후사업을 위해 지원하기도 하였음. 다른 국제기구의 사업준비금융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부록 4〉 참조

〈표 2〉 능력배양사업 지원 현황 (2016년 5월 기준, 나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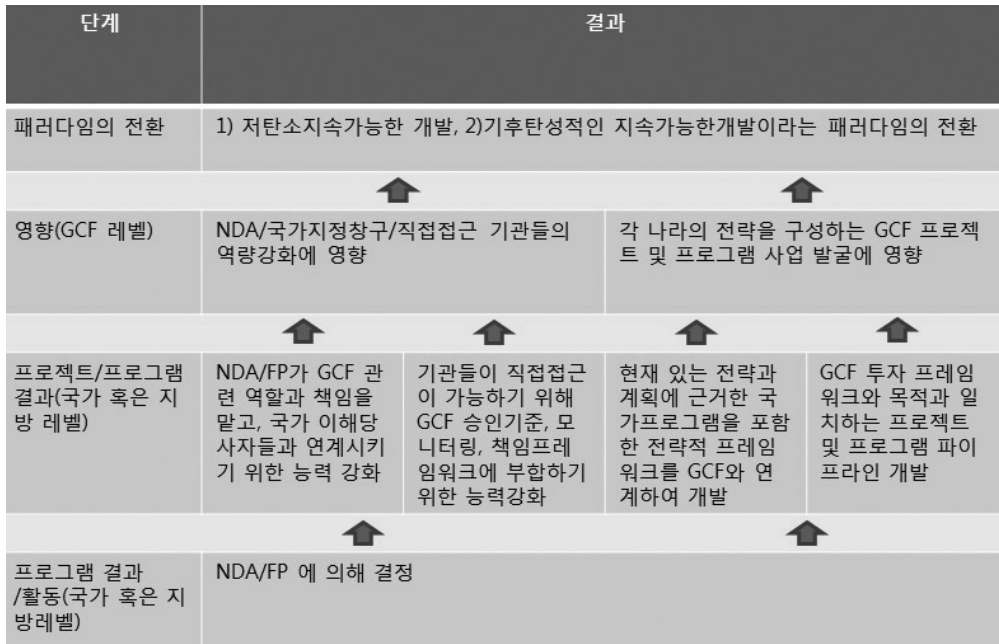
| 상태     | 총합                | 활동 1 & 2          | 활동 3           | 활동 4 & PPF       |
|--------|-------------------|-------------------|----------------|------------------|
| 요구제출   | 106               | 80                | 32             | 27               |
| 제안서제출  | 75                | 65                | 18             | 3                |
| 제안서승인  | 49                | 42                | 12             | 3                |
|        | USD<br>13,094,000 | USD<br>11,802,000 | USD<br>555,000 | USD<br>2,237,000 |
| 법률관계완료 | 24                | 13                | 12             | 3                |
|        | USD<br>4,442,000  | USD<br>3,750,000  | USD<br>555,000 | USD<br>137,000   |
| 재원지출   | 21                | 9                 | 12             | 1                |
|        | USD<br>1,395,000  | USD<br>936,000    | USD<br>389,000 | USD<br>70,000    |

비고: 숫자는 능력배양사업 지원과 관련한 나라 수를 의미하는데 몇 개의 나라들이 한 개가 아닌 여러 분야에서 능력배양사업 지원요청을 해옴에 따라 총합은 각각 활동의 합보다 작음.

출처: GCF (2016c)

GCF의 능력배양사업은 단계별로 각각의 구성원 및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궁극적으로 국가주도형의 GCF의 저탄소, 기후탄성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GCF의 패러다임의 전환목적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실제적으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는데, 첫째로, NDA/국가접촉창구/직접접근 기관들의 역량강화에 영향을 주며, 둘째로 각 나라의 전략을 구성하는 GCF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사업 발굴에 영향을 미친다. 능력배양프로그램의 각 단계별 영향을 시각화하면 아래의 〈그림 2〉과 같다.

〈그림 2〉 능력배양프로그램의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출처: GCF (2016a)

초기 능력배양사업은 승인을 기다리는 36개국 50개 후보 기관에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초기 능력배양사업을 통해 개도국과 GCF 모두 현재 능력배양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 교훈을 얻게 되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좀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 3>참조).

- (a) NDA/FP, 기관들이 GCF와 효율적으로 교류하기 위해 정보 및 문서의 적시 제공(템플릿, 문서유형) 필요
- (b) NDA/FP가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신속한 자원배분 체계 속에서 능력배양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한 절차의 간소화
- (c) NDA/FP, 기관들이 법률상 요구사항에 충족되기 위한 선 지급 필요성
- (d) 각국의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연성이 강조됨
- (e) 경험공유는 능력배양사업이 진척되기 위한 중요한 사항임

〈표 3〉 능력배양사업을 통해 얻은 교훈

| 구분                             | 교훈                                                                                                                                                                                                        | 고려방안                                                                                                                                                                                                                                                                                                                                                                                                           |
|--------------------------------|-----------------------------------------------------------------------------------------------------------------------------------------------------------------------------------------------------------|----------------------------------------------------------------------------------------------------------------------------------------------------------------------------------------------------------------------------------------------------------------------------------------------------------------------------------------------------------------------------------------------------------------|
| 의사소통<br>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몇몇의 국가와 기관에서 GCF의 변화에 대한 이해/ 국가 관련된 명확한 이해/ 사무국이 배포한 승인 정보에 대한 이해에 관해 어려움이 있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DA/FP 에 GCF 웹사이트 사용 장려/GCF 웹사이트의 편한 사용과 내용에 익숙해지도록 지원</li> <li>• 승인과 능력배양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좀 더 명확한 자료, 업데이트된 프레젠테이션, FAQ 문서 생산</li> <li>• GCF 수탁기준, ESS, 성(gender) 기준에 대해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과 자료의 지속적인 개발</li> <li>• NDA/FP과 기관들 관련한 중요 정보 및 문서의 신속한 번역(불어 및 스페인어), 그리고 불어와 스페인어로 된 능력배양 제안서의 영어로의 번역 지원</li> </ul>                                                   |
| 능력배양<br>사업<br>템플릿<br>및<br>승인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CF 수탁기준평가와 법적 절차 등을 포함한 정보에 대해 국가 및 기관들의 명확한 이해 부족</li> <li>• 국가와 기관이 다른 능력 배양활동과 연계 시 얻게 될 혜택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할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능력배양사업관련 안내책자 개발 및 관련 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술</li> <li>• 각 국가들이 노동량과 시간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템플릿을 안내책자에 포함</li> <li>• 제출, 승인주기(예) 연 4회) 등 GCF 능력배양 과정과 템플릿의 간편화 및 간소화 작업</li> <li>• 좀 더 개선되면서도 탄탄한 능력배양지원 및 역량강화 확립을 위해 다른 능력배양 활동들을 연계시키는 지침 제작</li> </ul>                                                                                                                            |
| 지식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CF 종사자 뿐만 아니라 지역을 불문하고 NDA/FP 간, 승인받은 기구와 승인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구끼리 상호 교류를 통한 혜택</li> <li>• 국가와 기관이 국제기관들로부터 정보를 받는 것과 다른 능력배양지원 경험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가치를 매길 수 있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와 관련된 워크숍 개최(가능하다면 GCF 본부에서)</li> <li>• 공동체/네트워크/정보 교환을 통하여 NDA/FP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구성 가속화</li> <li>• 관련 기관과의 파트너십 안에서 비디오, 툴키트를 포함하여 케이스스터디, 경험과 우수사례 검증 같은 정보 산물 개발</li> <li>• 민간부문, 학계, 시민사회조직 등 관련 이해당사자의 대표들과의 국가 조정 및 참여를 용이하게 함</li> <li>• 준국가, 국가, 혹은 지역기관, 이행기구 등과 함께 국가 기후 변화전략과 파이프라인 형성을 위해 국가조정, 다중 이해당사자의 참여 등의 방법 구상(NDA/FP 간 정보교환 기회, 워크숍 등)</li> </ul> |
| 표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에 대한 제한사항은 몇몇 국가에서 능력배양활동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제한이 있었음</li> </ul> <p>(예) 이해당사자 컨설팅 회의 수, 이해당사자 간 회의 시 참석자 수</p>                                                       | <p>국가요청이 있을 경우 제한요소 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구가 타당한 경우 나라의 경우,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 유연성 허용(사무국에 의해 평가)</li> <li>• 이해당사자 간에 회의 수, 참석자 수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하여 미국 달러 액수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li> </ul>                                                                                                                                                                                                        |

|                   |                                                                                                                                                                             |                                                                                                                                                                                                                                             |
|-------------------|-----------------------------------------------------------------------------------------------------------------------------------------------------------------------------|---------------------------------------------------------------------------------------------------------------------------------------------------------------------------------------------------------------------------------------------|
| 초기<br>지원과<br>내부역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몇몇의 나라들이 능력배양 사업 제안서를 준비하기 위해 미리 지급받는 것에 대해 관심을 표명</li> <li>• 몇몇의 나라와 기관들은 능력배양사업활동에 대한 이해와 제안서를 변형해서 작성하는 것에 대한 도움이 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서 준비 과정에서 협력기관과의 좀 더 견고한 관계 증진</li> <li>• NDA/FP가 필수 능력배양사업 제안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현물 지원</li> <li>• GCF 기준에 부합하여 승인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지방, 국가, 지역 기구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 및 국가 이벤트를 포함하여 NDA/FP에 도움 제공</li> </ul> |
|-------------------|-----------------------------------------------------------------------------------------------------------------------------------------------------------------------------|---------------------------------------------------------------------------------------------------------------------------------------------------------------------------------------------------------------------------------------------|

출처: GCF (2016a)

## 2.2.1. 능력배양 활동 1&2

2016년 5월 기준, 총 42개 나라에 능력배양활동(Activity Area, 이하 “AA”) 1(NDA/FP 설립 및 강화)과 2(전략적 프레임워크)의 능력배양지원을 승인하였는데 이는 11.8백만불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개도국은 능력배양사업 신청 시, 능력배양지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데 이를 전달파트너(delivery partner)라 하며 이 기관의 성격에 따라 직접적인(direct) 지원 혹은 국제조직을 통한(international) 지원으로 구분된다(<부록 2> access type 참조). 능력배양활동 AA 1&2의 지원을 받는 42개 나라 중 21개 나라는 그 나라의 기관을 거쳐 직접적인 지원을(15개 국가는 국가조직, 6개 국가는 지역 조직), 나머지 21개 국가는 국제조직을 통한 지원을 받게 된다.

직접 혹은 지역 기관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될 국가들 중 13개 국가는 이미 증여협정을 체결하였고 안티가 바부다, 볼리비아, 쿡아일랜드, 콩고, 에티오피아, 미크로네시아 연방, 말리, 르완다, 잠비아 등 9개 국가는 착수보고서를 완료하였는데 이 나라에 93.6만불이 이미 지출되었다. 이 9개국의 능력배양사업으로 인해 기대되는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국제기관을 통해 AA 1&2 지원을 받게 될 나라는 21개국으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이하 “FAO”), 독일국제협력공사(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이하 “GIZ”),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이하 “UNDP”),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등을 통해 능력배양사업 지원을 받게 된다. 이 나라들은 현재 상기 국제파트너간의 법률관계를 협의 중에 있다.

〈표 4〉 능력배양 AA 1&2를 통하여 예측되는 결과

| 국가(지원액 USD)                                                            | 결과물                                                                                                                                                        | 기한/완료일         |
|------------------------------------------------------------------------|------------------------------------------------------------------------------------------------------------------------------------------------------------|----------------|
| 앤티가 바부다<br>Ministry of Health and Environment<br>(USD 12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관리의 내부과정, 보고체계, 사업식별 개선</li> <li>• 지식관리, 의사소통, 대중인식 개선</li> <li>• 국가프로그램 개발</li> </ul>                        | 2017년<br>5월    |
| 볼리비아<br>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br>(USD 6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관리, GCF 운영 관련한 절차와 체계 등과 관련하여 NDA 역량 강화</li> </ul>                                                              | 2017년<br>10월   |
| 룩아일랜드<br>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Management<br>(USD 75,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접근기관 지명과 지지서한(No-objection Letter) 관련 온라인 자료 개발</li> <li>•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파악된, GCF 방침에 의거한 국가 우선순위 평가</li> </ul> | 2016년<br>9월    |
| 콩고<br>Le Centre de Suivi Ecologique<br>(USD 12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당사자간 조정과정 개선</li> <li>• 국가프로그램 준비</li> </ul>                                                                    | 2018년<br>2월    |
| 에티오피아<br>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Cooperation<br>(USD 12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당사자간 조정과정 확립</li> <li>• GCF 운영에 관한 NDA 훈련지원</li> <li>• 의사소통 계획 준비</li> <li>• 국가프로그램 준비</li> </ul>               | 2017년<br>9월    |
| 미크로네시아 연방<br>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당사자간 조정과정 개선</li> <li>• 국가프로그램 준비</li> </ul>                                                                    | 2017년<br>12월   |
| 말리<br>Sahel Eco<br>(US 141,000)                                        | • 국가프로그램 우선순위 관련 워크숍                                                                                                                                       | 2015년<br>4월 완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프로그램 준비</li> <li>• 사업우선순위를 위한 NDA 역량 증진</li> </ul>                                                              | 2016년<br>10월   |
| 르완다<br>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Fund<br>(USD 12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프로그램 준비</li> <li>• 이해당사자간의 조정 지원절차 확립</li> <li>• 지지서한(No-Objection Letter) 절차 확립</li> </ul>                     | 2016년<br>12월   |
| 잠비아<br>Ministry of Finance<br>(USD 6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프로그램 개발</li> <li>• GCF 재정을 위한 프로젝트 혹은 사업 평가를 위한 NDA 역량 개선</li> </ul>                                            | 2017년<br>10월   |

출처: GCF (2016c)

## 2.2.2. 능력배양 활동 3

능력배양 AA 3은 이행기구(IE) 선정관련 지원활동으로 크게 기관의 승인을 돕는 것과 승인된 직접 접근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능력배양 AA 3은 국가 내 이행기구로 적합한 기관을 선별하고, 필요 시 이행기구<sup>6)</sup> 절차를 돕는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GCF 사업은 이행기구가 사업 추진 주체가 되어 사업의 전 과정을 수행하게 되므로 자격 있는 적절한 이행기구의 선정과정은 능력배양사업 뿐만 아니라 GCF의 본 사업 수행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사무국은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라틴아메리카·캐리비안 이 세 대륙의 37개 나라에서 지명한 59개 기관에 대하여 현물 승인지원을 하였는데(〈표 5〉참조), 이것은 승인과정 단계별 지원 및 승인 신청에 관한 정보제공 지원을 포함한다. 이 중에 12개 나라의 15개 기관이 GCF 승인조건 부합을 위해 제도적 역량, 수탁 및 환경/사회 세이프가드(ESS), 성(gender) 기준 관련하여 심층평가를 받을 것을 승인받았다(상기 〈표 2〉 참조). 이 15개 기관의 지원을 위한 법적준비는 준비 중이며, 2016년 5월 기준으로, 38.9만불이 이 지원을 위해 이미 지출되었다.

---

6) GCF 설립 후 전세계 다수 기관이 이행기구를 신청하였으며, 2016년 8월 현재, 33개의 이행기구가 선정되었음. 승인된 이행기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3〉 참조

〈표 5〉 2016년 5월 기준, NDA 및 국가접촉창구의 승인지원(현물)을 받는 국가

| 아프리카     | 아시아 – 태평양       | 라틴아메리카 – 캐리비안 |
|----------|-----------------|---------------|
| 베닌       | 방글라데시(2)        | 아르헨티나(2)      |
| 에티오피아    | 캄보디아            | 벨리즈           |
| 케냐(3)    | 중국              | 브라질(2)        |
| 모리셔스     | 피지(2)           | 볼리비아          |
| 모로코(3)   | 인도(4)           | 콜롬비아(3)       |
| 나미비아(2)  | 인도네시아(3)        | 엘살바도르(2)      |
| 르완다      | 요르단             | 과테말라          |
| 세이셸      | 마셜제도            | 아이티           |
| 세네갈      | 미크로네시아연방 공화국(2) | 온두라스(2)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몽골              | 멕시코           |
| 튀니지(3)   | 팔라우             | 파나마           |
|          | 니우에             | 페루(2)         |
|          | 파키스탄(2)         |               |
|          | 베트남             |               |

비고: 괄호 안의 숫자는 지원을 받는 기관의 숫자임

출처: GCF (2016c)

상기 15개 기관의 지원을 위한 평가는 PricewaterhouseCoopers(PwC)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사무국이 선정한 전문적인 서비스회사인 PwC는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a) 기관을 이해 및 목적에 맞는 승인 절차와 기간의 격차분석을 설명하기 위한 초기 모임 개최
- (b) 직원과의 인터뷰 및 문서검토 및 현장검토
- (c) 격차의 인지 및 그 격차를 다루기 위한 권장사항을 포함하여 초안 및 최종 기관평가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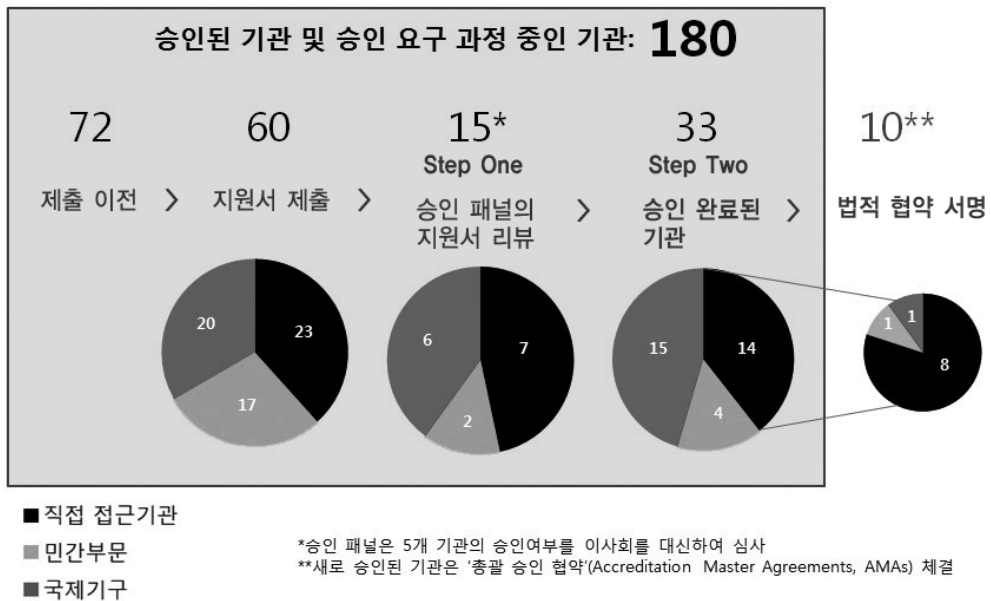
추후 승인 절차에 대한 쉬운 이해를 위해 사무국은 독일국제협력공사(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이하 “GIZ”)와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 Institute, 이하 “WRI”)와 온라인상에 Green Climate Fund Accreditation

Self-Assesment Tool을 개발하였다. 2016년 5월 기준으로 400여명(혹은 기관)이 접속하였으며 이중 75명(기관)이 이 평가들을 끝까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GCF 사무국은 GIZ와 WRI와 협력하여 이 툴의 두 번째 버전을 개발하고 하고 있다.

또 다른 AA 3의 활동으로 승인된 직접접근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으로 승인된 직접접근 기관을 돕는 활동은 아래와 같다.

- (a) 국가프로그램 관련하여 NDA/국가접촉창구와 업무조정
- (b) 기관의 연간/다년 업무프로그램 개발
- (c) 적응, 완화, 환경/사회 세이프가드(ESS), 성(gender), 모니터링, 평가, 그리고 관련 GCF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여러 다른 분야 등에 관해 내부 전문지식 강화
- (d) 지식공유, 그 나라에서 지방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조직한 GCF 포트폴리오 연례검토 참여

〈그림 3〉 이행기구 승인과정 및 승인 지원기관의 성격



출처: <http://www.greenclimate.fund/partners/accredited-entities>

위의 <그림 3>은 GCF 이행기구 승인과정에 있거나 승인이 완료된 기관 그리고 그 각각의 기관의 성격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승인이 되었거나 승인 과정에 있는 기관은 총 180 기관이다. 현재 승인이 완료된 기관은 33개 기관으로 33개국 중에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직접접근기관은 14개 기관(국내 9개, 지역 5개)으로 즉 14개 국가가 자금지원을 GCF로부터 직접적으로 받게 되며 이중 8개 기관이 법적 협약 서명이 완료된 상태이다. 국외기관 19기관 중에 국제기구는 15개 기관, 그리고 민간부분은 4개 기관이 승인을 받았다(승인기관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5> 참조).

승인된 33개 기관 중 직접접근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될 14개 기관은 전체 중 42.4%으로 이는 아직까지 스스로 GCF 인증 받을 만한 개도국 국내 기관의 역량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개도국에 자금이 직접적으로 유인되어 집행하게 한다는 원래의 GCF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능력배양사업에서 국내기관이 승인되도록 돕는 활동(활동 3)이 많이 지원되어야 한다.

### 2.2.3. 능력배양 활동 4

능력배양 AA 4는 사업발굴 지원으로 GCF 자금 활용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행기구를 통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구조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GCF는 컨셉 노트에 기반하여 직접접근기관이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을 돕는데 이는 능력배양 AA 4와 사업준비금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GCF 사무국은 NDA/FP와 그들의 직접접근 기관과의 활발한 업무연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그들이 프로그램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AA 4 지원은 기본적으로 국가지정기구(NDA)가 신청하되 이미 인증된 기구(Accredited Entities, 이하 “AE”)가 협력기관로 참여하는 것을 선호한다. AA 4를 위한 예산은 국가 당 연간 최대 100만불인데 전체 능력배양사업 예산이 각 국가 당 연간 100만불이므로 다른 AA가 있을 경우 해당 AA의 예산 차감 및 조정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많은 단계가 있으며 각각의 단계에 각각 다른 능력배양의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절절한 AA 4 지원을 위하여 프로젝트 개발 각각의 단계의 주요활동에 대한 점검과 그 단계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지원 방식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AA 4가 지원하는 항목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AA 4 지원대상 항목

| 카테고리                       | 내용                                                                                                                                          |
|----------------------------|---------------------------------------------------------------------------------------------------------------------------------------------|
| 1: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완료           | 재정/재정모델링, 경제성분석, 사회영향 분석, 기술/공학적 분석, 환경영향분석 등                                                                                               |
| 2: 프로젝트 구조화                | 민-관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 assessment: PPP), 다수 이해당사자와의 참여(Multi-stakeholder engagement), 재정구조, 법률자문, 기술/공학적 측면 지원, 조달, 모니터링, 평가 등 |
| 3: 거래(transaction) support | 직접접근기관에게 통역지원, 물자 및 서비스 지원, 법적 자문 등                                                                                                         |

출처: [https://www.greenclimate.fund/documents/20182/104167/Guide\\_for\\_Pipeline\\_Development\\_Support.pdf/eed1024a-0024-4f04-9527-895999fa3439](https://www.greenclimate.fund/documents/20182/104167/Guide_for_Pipeline_Development_Support.pdf/eed1024a-0024-4f04-9527-895999fa3439)

활동 4에 대해 지금까지 2개 나라 NDA가 고안한 사업이 승인지원을 받았는데 이 두 나라는 세네갈, 바누아토로 각각 IFC와 STREP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제안서를 개발·작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60만불(세네갈), 13.7만불(바누아토)의 자금지원을 받았다.

직접접근 이행기구는 사업타당성 평가 등의 수행을 위해 GCF 앞으로 사업준비금융(PPF)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PPF는 인증기구의 GCF 사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1차 이사회 시 설립이 결정되었다. 원칙적으로 모든 인증기구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국가이행기구(NIE) 지원에 우선순위가 있다. PPF 신청서는 GCF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며 지원서에는 PPF지원 사업이 국가의 기후변화 우선순위 활동에 적합한 정도와 이를 통해 수원국 주도원칙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명시되어야 한다. PPF의 승인과정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PPF 결정과정

| 과정                   | 내용                                                                    |
|----------------------|-----------------------------------------------------------------------|
| 1단계: PPF 요청서 작성 및 제출 | 승인기구는 개도국의 지지서한과 함께 GCF와 사무국과 상의한 후 PPF지원서를 GCF 사무국에 제출               |
| 2단계: PPF 평가          | 사무국은 GCF 예산기준, 사업필요의 합리성, GCF 관련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평가                     |
| 3단계: PPF 승인          | GCF 사무총장 및 지명자가 PPF의 승인을 결정. 사무국은 PPF관련 요청, 요청승인, 이행절차 등에 대해 이사회마다 보고 |

출처: GCF (2016d)

직접접근 이행기구는 사업당 1.5백만 달러 한도로 GCF 요청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사업준비금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FP/NDA와 상의해야 한다. 제12차 이사회에서는 GCF 이사회가 르완다의 자원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of Rwanda)가 신청한 1.5 백만 달러 사업준비금융을 최초로 승인하였는데 르완다 자원부는 기금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마스터 플랜을 구상하는 한편, 조림사업 등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승인된 르완다의 사업준비금융의 개요는 아래의 〈표 8〉과 같다.

〈표 8〉 르완다 사업준비금융의 개요

|        |                                                                                                                                                                                                                                           |
|--------|-------------------------------------------------------------------------------------------------------------------------------------------------------------------------------------------------------------------------------------------|
| 국가     | 르완다                                                                                                                                                                                                                                       |
| 프로젝트 명 | 농촌녹색경제와 기후탄성적인개발프로그램을 위한 사업준비금융적용                                                                                                                                                                                                         |
| 인증기구   | 르완다 자원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of Rwanda: MINIRENA)                                                                                                                                                                                |
| 요청금액   | 1.5백만 달러                                                                                                                                                                                                                                  |
| 제안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프라, 에너지, 물/폐수 관련 마스터플랜개발</li> <li>· 타당성조사(산림 및 유역관린 타당성 연구, 기후탄성적인 차(tea) 타당성조사)</li> <li>· 환경사회영향평가 준비</li> <li>· 재무, 경제분석 준비</li> <li>· 메뉴얼 이행을 포함한 프로젝트 관리계획 개발</li> <li>· 법적계약준비</li> </ul> |

출처: GCF (2016b)

GCF가 발표한 PPF가 지원하는 활동<sup>7)</sup>은 다음과 같다.

- (a) 지표선(baseline) 데이터, 기술연구, 세부설계, 재무 및 경제분석 등을 포함한 예비타당성/타당성 연구 및 사업설계
- (b) 환경/사회영향평가, 환경/사회경영계획, 이주실행계획(resettlement action plans), 성별영향평가, 실천계획 등을 포함한 환경/사회/성(gender) 연구
- (C) 기술, 제도, 운영, 재정, 사회, 환경 인자 등을 포함한 위험 평가(risk assessments)
- (d) 녹색기후기금의 성과관리틀과 영향(결과)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지원에 맞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수준 지표
- (e) 사업입찰서류, 도급업자 선정에 필요한 상담서비스, 입찰서류수정 등을 포함한 계약 전 서비스
- (f) 필요시 충분한 사유에 의한 그 밖의 사업 준비 활동

능력배양프로그램 다른 활동과 함께 사업준비금융을 통해 GCF는 개도국이 효과적이고 야심찬 프로젝트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돕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능력배양 지원을 위한 재원을 늘이는 것과 개도국에 적절한 시기에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능력배양과 PPF 제안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중요하며 GCF 사무국은 이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예: 온라인에서 템플릿 제공, 신청서를 이메일로 받기 등)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여겨진다.

## 2.2.4. 능력배양 활동 5

2016년 2월 기준으로 GCF 사무국은 아프리카-중동, 아시아, 캐리비안, 중앙아메리카, 태평양 등의 지역에서 다섯 번의 지역 워크숍과 ESS와 성(gender) 관련하여 직접접근기관들을 위한 교육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또한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능력배양 주간(Readiness Week)”이 처음 개최되었는데 일주일간 개최된 이번 행사는 당시 직접접근으로 인증된 13개 인증기구와 27개 개도국 NDA/FP 대표가 참석했다. 이 행사는 해당 기관, NDA/FP, GCF 사무국과의 구조화된 대화채널을 통해 직접접근기관을 통한 프로젝트의 확대

---

7) GCF (2016d)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에 초점을 둔 것으로 상기 나열한 활동들은 능력배양 AA 5에 해당되는 것이다. GCF 능력배양 AA 5는 능력배양 정보·지식 공유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GCF, 기후변화 관련 워크숍, 컨퍼런스 개최가 그 예이다. 다른 네가지의 AA와 달리 AA 5의 혜택은 특정한 개개인의 국가가 아닌 넓은 의미에서의 AA 5의 행사 및 정보에 참여·이용한 모든 개도국이라 할 수 있다. 능력배양 AA 5가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용<sup>8)</sup>은 다음과 같다.

- (a) NDA/FP, 향후 현재 이행기구이거나 향후 이행기구 가능성이 있는 기관, 시민사회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들과 GCF에 대한 이해 증진 및 GCF와의 사업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지역 워크숍 개최
- (b) 지역 수준에서의 이해당사자간의 교훈 및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 개최
- (c) 국가 수준에서 실질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능력배양 경험에서 오는 교훈을 정리하고 국제적인 기후금융 공간에서 이러한 지식과 해당 관련자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체제 구축(예: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회의(보고회 등))

---

8) GCF (2016d)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 3. GCF 능력배양사업 분석

#### 3.1. 승인 된 GCF 능력배양사업 내용분석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GCF 사무국은 이 중 49개 나라에서 제출한 능력배양사업 제안을 승인하였는데 승인된 49개 사업은 GCF 능력배양 활동 중 1-4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총 1300만불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표 2〉 참조.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참조).

〈표 9〉 승인된 GCF 능력배양사업 전달파트너별/활동별 분류

|        | 직접 | 국제 | na          | 합계<br>(프로젝트 수) | 합계 (USD)<br>(전체 지출액 중 비율) |
|--------|----|----|-------------|----------------|---------------------------|
| 활동 1&2 | 21 | 21 |             | 42<br>(75%)    | USD<br>11,802,000(90.1%)  |
| 활동 3   |    |    | 12<br>(PwC) | 12<br>(21.4%)  | USD<br>555,000(4.2%)      |
| 활동 4   | 1  | 1  |             | 2<br>(3.6%)    | USD<br>737,000(5.6%)      |
| 합계     | 22 | 22 | 12          | 56             | USD<br>13,094,000         |

출처: GCF (2016c) 참고하여 재구성

〈표 9〉를 살펴보면 승인된 49개 나라의 56개 활동 중 활동 1과 2가 42건으로 가장 많이 승인되었고 이는 승인건수로 볼 때 전체 중 75%에 해당한다. 지출된 예산으로 볼 때 활동 1과 2를 위해 지출된 비용은 1100만불로 전체 지출 중 90%에 해당하는 등 활동 1과 2는 승인 건수와 사용된 예산 모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활동 3의 경우 12개의 프로젝트가 승인되었는데 승인 건수로 볼 때 두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승인 건수 비율 21.4%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출액 중 비율은 4.2%로 지출액 비율은 승인건수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는 활동 3의 각 나라당 지출액 자체가 작은 것에 기인하는데 활동 3의 12개 사업 중 9건이 37천불, 3건이 74천불로 평균 활동 3의 1개의 사업 당 평균액은 46천불 정도로 이는 활동 1과 2의 사업 중 최소 승인액인 15만불과 비교하여 볼 때 아주 낮은

금액이다.

활동 4는 전체 56개 활동 중 승인된 것은 2건으로 승인 건수는 가장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 4는 승인 건수는 가장 적지만 소요된 예산비율은 5.6%로 활동 1&2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활동 4의 소요예산 단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활동 4의 내용으로 세네갈, 바누아토는 각각 IFC와 STREP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60만불(세네갈), 13.7만불(바누아토)의 자금지원을 받았는데 특히 세네갈의 지원금은 전체 승인된 56개 활동 중 가장 큰 자금액이다.

### 3.2. 승인 된 GCF 능력배양사업 전달파트너별 분류

전달파트너(Delivery Partner)는 NDA 혹은 FP가 능력배양지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선정한 기관을 의미하는데 전달파트너는 능력배양요청, 관리감독, 재정관리 진행보고, 프로젝트 완료 및 평가 등 능력배양프로젝트 관련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 전달파트너는 MDBs, UN 기구 등 국제기구, 다른 국제/지역/국가 기구, 그리고 관련 능력배양 활동에 정통한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공공 및 사조직 기구 등이 될 수 있다.

아래의 <표 10>은 승인된 56개 능력배양 사업 중 22개 직접접근을 통한 능력배양사업을 제외한 사업 34개를 전달파트너별로 구분한 것이다. 사무국이 선정한 전문적인 서비스회사인 PricewaterhouseCoopers(PwC)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국제기관(international)이다. UN 기관으로서 UNDP의 경우 이미 GCF의 인증을 받은 인증기구로서 가장 활발히 본 사업 및 능력배양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표 10>에서 보듯이 UNDP는 13개 국가의 능력배양사업에 전달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PwC가 12건의 능력배양사업의 전달파트너의 역할을 하고 있다. PwC는 승인된 12개의 모든 AA 3의 전달파트너를 담당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PwC는 AA 3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이 선정한 전문적인 서비스회사로서 AA 3에 대한 특화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주목해야 할 것으로 독일국제협력공사(GIZ)가 6개 기관 중에 유일하게 양자협력기관으로 국제기구인 UNDP 다음으로(13건) 많은 프로젝트(5건)에 관여하고 있다. UNEP의 경우 베닌과 코모로스 등 2개국의 능력배양 프로그램의 실행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어 FAO와 IFC가 각각 1개국의 능력배양 프로그램의 실행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표 10〉 승인된 능력배양 사업 중 전달파트너별 프로젝트 수

| 전달파트너 | 프로젝트 수 | 분류     | 지원활동    |
|-------|--------|--------|---------|
| UNDP  | 13     | UN기구   | 활동 1과 2 |
| PwC   | 12     | 민간     | 활동 3    |
| GIZ   | 5      | 양자기구   | 활동 1과 2 |
| UNEP  | 2      | UN기구   | 활동 1과 2 |
| FAO   | 1      | UN기구   | 활동 1과 2 |
| IFC   | 1      | 다자금융기구 | 활동 4    |
| 합계    | 34     |        |         |

출처: GCF (2016c) 참고하여 재구성

## 4. KOICA의 GCF 능력배양사업 적용 방안

### 4.1. KOICA의 GCF 관련 활동

KOICA는 2013년 12월 GCF 개소 이후 GCF 활동 및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 그 첫 번째 예는 GCF와의 연계사업으로 co-financing(협조융자)이다. 2015년 11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활용해 페루 아마존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인 ‘페루 마라농 습지대 복원력 구축사업’이 GCF 첫 사업으로 승인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발굴하여, 페루 환경보호기금(PROFONENPE)에서 GCF에 제안한 사업으로 GCF 624만불, 이행기구(PROFONANPE) 107만불, KOICA 180만불<sup>9)</sup> 등 co-financing 형식으로 2016년부터 2019년 동안 총 3년간 총 911만불이 지원된다. KOICA 분담내용에는 과일을 활용한 기름·펄프·주스 생산시설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 및 전기저장장치 기자재공급 및 기술이전 등이 포함된다. 이 페루사업을 시작으로 KOICA의 GCF 사업제안을 목표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베트남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 분야에서 각각 사업을 발굴, 연내 GCF 사업제안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저감분야로 ‘산업에너지 효율 개선사업(17-20/1200만불 기술협력)’을 KOICA, GCF, 이행기구(world bank)가 co-financing으로 추진하여 World Bank의 차관사업(3억불)과 연계하여 시행할 것을 계획 중에 있다. 적응분야의 경우 “꽝남성 자연제방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수원국과 협의 중에 있다. 현재 GCF의 본 사업은 17개만이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시행이 진행될 것이므로 GCF와의 연계사업 발굴작업을 위한 노력은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GCF 사업 승인을 위한 KOICA의 co-financing 참여는 △우선 순위에 근거한 제한적/선별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점, △기존의 사업 추진 채널과 다른 절차를 밟음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부담 검토, △KOICA 사업으로써의 추가적인 타당성 검증 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10)</sup>.

두 번째는 KOICA의 이행기구 인증 추진 작업이다. 2016년 2월 기획재정부의 KOICA 이

9) KOICA 분담예산(180만불)의 경우 ‘17년도 신규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반영하여 예산 신청 예정

10) KOICA 내부문건, 협기후-396(2016.3.10.)

행기구 인증추진 검토 요청에 따라, 2016년 5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인증 추진이 결정되었으며 2016년 8월 현재, 인증추진 위탁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을 시행 중에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6년 8월 현재, 개발은행, 개도국 기구 등 총 33개 기구가 인증되었다. 한국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인증 신청 중<sup>11)</sup>에 있다. GCF 측은 이행기구 인증 시, 개도국 기구, 국제기구, 양자기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양자원조기관인 KOICA의 경우도 인증의 가능성이 낮고, 또한 인증이 계속 지연될 우려가 있다. KOICA는 GCF의 4가지 자금형태<sup>12)</sup> 중 공여(grant) 부분 인증을 신청 중인데, 수원국에서 GCF 양허성 차관(loan) 보다는 공여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KOICA가 조속하게 공여 인증을 받을 시, GCF 사업을 효과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행기구 인증 추진 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6년 6월에 개최된 13차 이사회에서는 이행기구 인증과 신규사업 승인 등 두 개에 안전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한 5개 후보기관<sup>13)</sup> 인증이 상정되었는데 이사회는 한국수출입은행과 같은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이 GCF 이행기구로 적합한지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하여, 5개 전체 후보기관에 대한 인증결정이 14차 이사회(2016년 10월)로 연기되었다. 한국 기관으로 수출입은행의 인증여부와 함께 KOICA는 13차 이사회에 상정된 5개 후보기관 중 KOICA와 기관 성격을 같이하는 GIZ의 인증성사 여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Readiness Coordination Mechanism(이하 “RCM”)<sup>14)</sup>에 KOICA 참여가 있다. RCM은 GIZ, UNDP, UNEP, AfDB, KfW 등 GCF 능력배양사업을 추진하는 공여기관이 모여, Readiness 지원현황 및 정보를 공유하는 메커니즘으로, GCF 주축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이는 직접접근 강화를 위한 RCM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모임이다.

11) 한국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인증 신청 중에 있는데 수출입은행은 이사회 인증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산업은행의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하여 2차 심사를 앞두고 있음

12) △공여(grant), △양허성 차관(loan), △지분참여(equity), △보증(guarantees)

13) 한국수출입은행, 독일 GIZ, 서아프리카개발은행(West African Development Bank), 카리브 개발은행(Caribbean Development Bank), 몽골 하스뱅크(XacBank LLC/현지민간은행)

14) RCM 멤버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GIZ, KfW, UNDP, UNEP, WRI임(GCF, 2006c). 추가적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은 2016.3.11.부터 RCM 멤버가 되었음. 한국 영국연방사무국(Commonwealth Secretariat),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KOICA, 사하라 사헬 관측소(Sahara and Sahel Observatory) 등은 RCM 회의에 필요시 참석하여 활동하고 있음

KOICA는 RCM 회원은 아니지만 메커니즘에 공식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데<sup>15)</sup>, RCM 회의 내에서 기존의 개도국 역량배양 중심의 능력배양사업을 주도해 온 기관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OICA는 GCF 능력배양사업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능력배양사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RCM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4.2. 향후 KOICA 기후변화사업 방향 제시

본 장에서는 GCF 능력배양사업과 KOICA 기후변화사업의 연계를 위해 지금까지의 KOICA의 기후변화사업을 살펴보았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KOICA 기후변화대응관련 사업은 총 154개<sup>16)</sup>로 보이며 본 연구는 이들 사업 중 상기 GCF 능력배양사업내용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분류해보았다(표 11 참조). 그 결과 능력배양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154개 중 21개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KOICA 기후변화 대응관련 전체 사업수의 약 13%에 해당된다.

아래 <표 11>은 저자가 분석한 21개 사업의 개요 사업목적, 사업내용,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을 보여준다. <표 11>의 마지막 열의 사업구분은 이 사업의 내용을 GCF 능력배양활동으로 분류한 것이다. 각각의 사업의 내용은 한 사업 안에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어 GCF 능력배양사업의 각 활동(1-5)과 일대일로 대응하여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실제 대응되는 사업이 있더라도 사업 전체가 아닌 일부분의 내용이 대응되는 경우가 많았다. 분류 결과 21개 KOICA 기후변화대응사업을 GCF 능력배양사업 관점에서 보면 활동 2, 4, 5로 나뉘며 특히 활동 2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GCF 능력배양사업으로 뚜렷하게 분류할 수는 없지만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역시 KOICA 기후변화 사업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OICA 기후환경팀은 KOICA의 능력배양활동은 사업발굴(pipeline development) 및 제안서 작성지원(funding proposal)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sup>17)</sup> 이는 GCF가 승

---

15) 2016년 3월, 4월 2회 기 참석

16) 한국국제협력단 기후협력팀 내부 자료 이용

17) KOICA 내부문서, 협기후-715(2016.05.03.)

인하고 있는 활동 중 활동 2(전략적 프레임워크)와 4(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제안 파이프라인 구축)의 활동의 내용이라고 사료된다. 즉 KOICA의 능력배양활동은 개도국 정부 및 이행기구의 제도적 역량구축보다는 사업발굴 및 제안서 작성지원에 특성화가 되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 <표 11>에서 보듯이 2005년부터 지금까지 KOICA 기후변화대응관련 사업을 구분하였을 때 크게 활동 2, 4, 5로 나뉜다는 것은 KOICA 기후변화 능력배양사업의 향후 방향성의 합리적인 근거가 된다고 여겨진다.

〈표 11〉 KOICA 기후변화사업 (2005년~현재) 중 능력배양사업 내용

| 사업명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사업<br>구분*   |
|------------------------------------------------------------------------|----------------------------------------------------------------------------------------------------------------------------|---------------------------------------------------------------------------------------------|-------------|
| 인니 산림 및 생태관광<br>학교 능력강화사업                                              | 생태환경보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                                                                                             | 4           |
| 캄보디아 수자원개발<br>종합계획수립사업<br>(2006~2008/148만불)                            | 캄보디아의<br>수자원개발계획 수립                                                                                                        | 전문가파견(공동정책연구),<br>워크숍 개최, 국내초청연수                                                            | 5<br>(부분)   |
| 산림환경보전 및<br>생태관광 역량강화사업<br>(2007~2009/100만불)                           | 인니 산림자원환경관리 및 보전을<br>위한 교육체계수립을 통한 인력양성<br>및 생태관리역량강화                                                                      | 한· 인니간 공동연구를 통한 산림<br>환경보전 및 생태관광 교육프로그램<br>(10개월 과정) 개발 및 시범교육 실시                          | 4,5<br>(부분) |
| 튀니지 코르크<br>참나무숲 쇠퇴원인<br>분석 및 지속가능개발사업<br>(2007~2010/60만불)              | cork oak 숲 쇠퇴원인에 대한<br>과학적 분석 및 천연갱신능력 복원<br>을 통한 튀니지 산림지대 보전                                                              | 1. 전문가파견을 통한 식물생리학,<br>GIS/RS기술전수<br>2. 산림경영, 식물생리학, 생물통계,<br>GIS/RS분야국내초청연수<br>3. 기자재공여    | 교육<br>(부분)  |
| 미얀마 농업관개기술센터<br>역량강화사업<br>(2008~2010/200만불)                            | 농업관개기술 교육훈련 역량강화                                                                                                           | 댐 및 관개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질<br>재료시험 및 품질검사 실시, 교육훈<br>련 등을 위한 최신 관개기술 실험실을<br>건립하여 관개사업에 필요한 기술전수   | 교육          |
| 한· 인니 산림분야<br>기후변화대응<br>역량강화사업<br>(2008~2012/500만불)                    | 한· 인니 산림분야 기후변화대응<br>역량강화사업                                                                                                | A/R CDM 타당성 연구, REDD 적용<br>타당성조사, 기자재지원, 심포지엄 등                                             | 5<br>(부분)   |
| 요르단 에너지<br>청정개발체제<br>구축역량강화사업<br>(2010~2011/50만불)                      | 요르단 청정개발체제 구축 지원을<br>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br>발전능력 배양                                                                         | CDM관련 전문가파견, 국내초청연수,<br>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등                                                     | 교육          |
| 인도네시아 까리안탐<br>~세르풍간 용<br>수공급시설 마스터플랜<br>및 타당성조사사업<br>(2010~2011/150만불) |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최적 용수<br>공급시설 확충 계획 수립, 수도시설<br>의 설계 및 건설관련 기술지원으로<br>인도네시아측 수자원분야 인력 역량<br>강화, 민간투자사업계획 수립으로<br>본 사업의 실행력 강화 |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자카르타 및<br>반덴주의 최적 용수공급시설 확충 계<br>획 수립, 한국의 도수로, 정수장 등 수<br>도시설의 설계 및 건설관련 기술지원 | 2           |
| 녹색성장정책 지원사업<br>/GGGI<br>(2011/-)                                       | 필리핀 녹색성장 계획수립 지원을<br>통한 기후변화 적응 능력 제고 및<br>사회경제 개발 도모                                                                      | 녹색성장 계획 수립 및 녹색성장 관련<br>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 2           |
| 이집트 배전자동화<br>시스템구축<br>마스터 플랜 수립 및<br>자동화 시스템 확장사업<br>(2011~2015/260만불) | 이집트 북부카이로 지역의 정전시<br>간과 배전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는<br>배전자동화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br>및 시스템 확대                                                  | 배전자동화 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br>및 확장                                                                  | 2           |

|                                                           |                                                                                                                        |                                                                           |         |
|-----------------------------------------------------------|------------------------------------------------------------------------------------------------------------------------|---------------------------------------------------------------------------|---------|
| 모로코 태양광에너지 연구역량강화 지원사업 (2012~2014/250만불)                  | 모로코 "태양광 연구센터"의 연구시설을 강화 및 한국 실리콘 박막태양전지 고효율화에 관한 기술력을 전수하는 현지교육 및 초청연수를 통해 모로코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 (Green Morocco 2020) 달성 지원 | 태양광에너지 전문가 파견, 모로코 학계 및 기술자 관련자들의 국내초청연수,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기자재 지원 및 교육         | 교육 (부분) |
| 키르기즈스탄 산림보전 역량강화사업 (2010~2015/100만불)                      | 키르기즈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분야 기초적 역량강화 및 인프라 구축                                                                                   | 건물개보수,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및 기자재 지원                                            | 교육 (부분) |
| 녹색성장정책 지원사업 /GGGI (2012/-)                                | 필리핀 녹색성장 계획수립 지원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 능력 제고 및 사회경제 개발 도모                                                                        | 녹색성장 계획 수립 및 녹색성장 관련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 2       |
| 인도네시아 남부칼리만탄 녹색학교 실행 사업 (2012~2013/70만불)                  | 인니 남부칼리만탄 반자르마신 지역 기후변화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에 대한 교사역량 강화하여 사업대상지역에 적합한 환경교육 정책 개발                                               | 환경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현지연수 및 교재개발                                                 | 교육      |
| 베트남 국가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2013~2016/200만불)                   | 베트남 녹색성장전략(VGGS)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을 통해서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제 기대에 부합하는 베트남 국가 위상 정립                                       | 법적체계, 지역개발전략등 전문가 파견, 법적체계 및 전담기구 초청연수, 자문회의개최, 파일럿 프로젝트 실시, 현지세미나 및 컨퍼런스 | 2       |
| 인도네시아 팔렘방시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 및 타당성조사 사업 (2012~2016/260만불) | 수마트라섬 팔렘방의 배수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기본설계 제공을 통한 상습적 홍수, 침수 문제 해결에 기여                                                        | 19개 지역 마스터플랜 및 10개 우선 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초청연수                           | 2 (부분)  |
| 카메룬 재생에너지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2014~2016/200만불)                  | 카메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2014~2035년 재생에너지 개발 마스터플랜과 실행계획 (Action plan) 수립                                               | 1. 마스터플랜 수립<br>2. 부존량 조사<br>3. 역량강화<br>4. 사업관리                            | 2       |
| 베트남 그린시티 도시계획 의사결정시스템 구축사업 (2015~2017/650만불)              | 친환경 도시계획을 통한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 그린시티마스터플랜수립,그린시티액션플랜작성,시범도시스마트시스템구축,지식공유포럼 및 투자포럼 개최                      | 2,5     |
| 모잠비크 수자원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2015~2017/500만불)                  | 수원국의 만성적인 물 부족과 홍수 피해에 벗어나기 위한 국가 전략 수립                                                                                | 모잠비크 국가 종합 수자원관리계획 수립                                                     | 2       |
| 모로코 세부강 유역 홍수방지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2015~2017/400만불)              | 세부강 유역 내 가브팡야지역의 재난안전성 확보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 기여                                                                      | 세부강 홍수저감능력 배양                                                             | 2       |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권해안종합개발 컨설팅사업 (2014~2017/950만불)              | 해안침식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한 방조제 건설의 타당성 분석 및 방지 시스템 구축                                                                           | 현장 자료조사, 마스터플랜 분석, 지형도 제작, 초청연수, 사업관리 등                                   | 5 (부분)  |

출처: KOICA 기후환경팀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비고: \* 사업구분은 해당사업의 내용을 바탕으로 GCF 능력배양사업의 활동별 내용에 따라 각 사업의 성격을 분류한 것으로 "부분"으로 나타난 것은 부분적으로 해당 능력사업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의미임.

〈표 13〉 한국 중점협력국 능력배양사업 승인현황

| 지역(개수)    | 한국 중점협력국                       | 승인현황 |
|-----------|--------------------------------|------|
| 아시아(11)   |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파키스탄     | O    |
|           |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 X    |
| 아프리카(7)   | 에티오피아*, 르완다*, 세네갈*, 탄자니아       | O    |
|           | 가나, 모잠비크, 우간다                  | X    |
| 중동/CIS(2) |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 X    |
| 중남미(4)    |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 O    |
|           | 파라과이                           | X    |

비고: \* 국가는 NIE 승인을 받은 국가

상기 〈표 13〉는 우리나라 24개 ODA 중점협력국의 GCF 능력배양사업 승인현황을 보여준다. 2016년 8월 현재 기준, 24개 중점협력국 중 12개국만이 GCF 능력배양사업 혜택을 받은 상황이며 나머지 12국은 능력배양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우리나라 중점협력국 수원국가들에 대한 기초분석이 필요하다. 즉, 이 국가들의 능력배양사업에 대한 이해의 정도 파악과 함께 그들의 능력배양사업의 필요와 필요분야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표 13〉에서 보듯이 24개 중점협력국 중 4개의 국가만이 NIE 승인을 받은 상태로 나머지 국가 중 국내기관이 NIE로 승인되기 위한 승인활동(활동 3) 역시 KOICA가 기후변화사업으로 실시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일 수 있다.

특이사항으로는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현재 NDA 지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개도국 국가에게 직접접근에 대한 내용을 알게 하고 NDA 역할에 대한 교육 및 이해 증진을 통해 역량을 갖춘 기관을 NDA로 지정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선행되어야 하는 능력배양사업 활동인 바(홍은경, 2014)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NDA 자문활동이 요구된다.

〈표 14〉 GIZ 능력배양사업 현황

| 국가       | 활동  | 예산      | 기간 | 현황      |
|----------|-----|---------|----|---------|
| Mongolia | 1+2 | 300,000 | 12 | 법적 절차 중 |
| Pakistan | 1+2 | 300,000 | 6  | 법적 절차 중 |
| Peru     | 1+2 | 300,000 | 6  | 법적 절차 중 |
| Thailand | 1   | 102,000 | 6  | 법적 절차 중 |
| Vanuatu  | 1+2 | 300,000 | 24 | 법적 절차 중 |

출처: GCF (2016c) 참고하여 저자재구성

상기 3.2.에서 본 연구는 GIZ가 전달파트너로서 6개 국가의 GCF 능력배양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는데 〈표 14〉는 GIZ가 전달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GCF 능력배양사업을 보여주고 있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GIZ는 국제기관으로서 UNDP 다음으로 가장 많이 GCF 능력배양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기관이다. 표에서 보듯이 GIZ의 활동은 주로 활동 1과 2로 특화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능력배양사업은 이를 통해 기후변화사업이 발굴되므로 기후변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초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GCF와 본사업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능력배양사업단계서부터 개도국에 관여하여 그들의 능력배양사업을 도와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KOICA의 경우 RCM 공식 일원은 아니나 RCM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해당 이해당사자들간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KOICA는 우선적으로 RCM 회의에 계속적으로 참여하여 능력배양사업의 주체자 및 이해당사자로 국제사회에 인지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KOICA의 기후변화사업 중 능력배양 관련한 사업의 경험을 주지시켜 궁극적으로 개도국으로 하여금 KOICA를 전달파트너로 선정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전달파트너의 자격은 정형화된 틀과 기준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 아닌 NDA/FP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므로 향후 KOICA의 노력에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GIZ의 능력배양사업은 〈표 14〉에서 보이는 것처럼, 활동 1,2에 특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KOICA의 경우 지금까지 기후변화사업처럼 활동 2,4,5에 초점을 두어 특화시킨다면 GIZ와 견주어 볼 때 차별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GCF READINESS PROGRAMME(이하 “GCF RP”)은 독일 연방 환경부의 국제 기후 이

니셔티브(the International Climate Initiative)의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UNEP, UNDP, WRI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개도국이 기후금융에 관한 계획, 관리, 지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함으로써 GCF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GCF RP는 국가 기후재원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강화시키며, 개도국의 기후변화 활동의 우선 순위 파악을 도우며 기후관련분야에서 민간부분에서 확대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 현재 베닌,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피지, 가나, 케냐, 네팔,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9개국의 능력배양을 돕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워크숍 개최를 통해 개도국 간의 의견 및 교환 교환을 통한 역량강화에도 힘쓰고 있다<sup>18)</sup>. GCF RP에서 활동하고 있는 UNEP, UNDP, WRI의 경우 이미 GCF의 능력배양사업에 여러 가지 경우로 깊게 관여하고 있는 기관으로 이들은 이미 GCF의 능력배양사업에 활동적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의 GCF 접근을 위한 능력배양을 증진시키며 국제사회에서 능력배양사업 파트너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현재 GCF의 본 사업은 17개만이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시행이 진행될 것이다. 본 사업의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GCF와 공동으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작업과 노력도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GCF 운영 초기인 현 시점에서 KOICA의 GCF와의 연계방안은 능력배양사업이다. 능력배양사업은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GCF 능력배양사업의 내용으로 KOICA가 개도국에 능력배양사업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도국에 전략적 프레임워크 제공 및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제안 파이프라인 구축 지원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좀 더 큰 활동으로 상기 예시된 GCF RP처럼 KOICA도 능력배양에 특화된 프로그램 혹은 이니셔티브 개발을 한다면 KOICA의 경험과 전문성을 개도국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국가/지역차원의 능력배양워크숍 및 정보공유포럼을 KOICA가 주최하여 개도국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능력배양사업의 예라고 사료된다. 이를 통해서 많은 개도국에게 KOICA의 경험과 전문성을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배양에 대한 KOICA의 관심 역시 보일 수 있는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다. GCF 사무국은 자격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민간회사 대상 명단을 만드는데 관심이 있음을 표명하였는데 이들 기관들은 승인된 기관이나 나라에 사업발

18) <http://www.gcfreadinessprogramme.org> 참조하여 요약하였음.

굴(pipeline development) 및 제안서 작성지원(funding proposal)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사무국은 이미 여러 개의 제안서를 받은 상태이며 제안서들을 검토 중이다. 따라서 KOICA 고유의 사업으로 사업발굴과 제안서 작성 지원사업을 특화시켜 GCF 사무국에 전문성을 상기시키는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들의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GCF와 관련된 채널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방법도 병행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KOICA는 최근 두차례의 RCM회의에 참여하여 GCF 능력배양사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동시에 KOICA는 승인기구 인증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개도국과 GCF에 적극적인 사업파트너로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KOICA를 파트너로 선정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승인된 GCF 능력배양사업의 내용 파악을 통해 KOICA 기후환경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즉,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GCF 능력배양사업과 KOICA 기후변화사업과의 접점을 모색하여 향후 KOICA 기후변화사업에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6년 5월 기준으로 75개 나라에서 능력배양사업 제안서를 받았으며 이 75개 나라 중, GCF 사무국은 49개 나라에서 제출한 능력배양사업 제안을 승인한 상태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49개 나라에서 제출한 56개 능력배양사업을 활동 별 승인 수와 각 활동의 지출규모, 그리고 지정파트너별로 살펴보았다. 또한 GCF 능력배양사업과 KOICA 기후변화사업의 연계를 위해 지금까지의 KOICA의 기후변화사업을 살펴보았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KOICA 기후변화대응관련 사업은 총 154개로 보이며 이들 사업 중 상기 GCF 능력배양사업내용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분류하였을 때 대략 21개로 추려졌는데 이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KOICA 기후변화 대응관련 전체사업수의 약 13%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GCF 능력배양사업내용으로 분류 결과 21개 KOICA 기후변화대응사업을 GCF 능력배양사업 관점에서 보면 활동 2, 4, 5로 나뉘며 특히 활동 2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KOICA의 능력배양활동은 개도국 정부 및 이행기구의 제도적 역량구축보다는 사업발굴(pipeline development) 및 기획(funding proposal 작성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GCF의 능력배양 활동으로 볼 때 GCF가 승인하고 있는 활동 중 활동 2(전략적 프레임워크)와 4(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제안 파이프라인 구축)의 활동의 내용이라고 사료되며 활동 2는 현재 승인된 GCF 능력배양사업기준으로 볼 때 가장 GCF가 지원을 많이 하는 활동이며 활동 4는 승인건수는 많지 않지만 지원액 자체가 큰 활동으로 이 두 활동 모두 전체 GCF 능력배양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들이라 하겠다.

KOICA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사업을 통하여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위해 힘써왔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KOICA의 기후변화사업은 우선적으로 개도국의 준비 역량 강화를 위해 초점을 두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략적 프레임워크와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제안 파이프라인 구축에 있어서 KOICA의 경험과 전문성을 개도국에게 알려 개도국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그들이 GCF에 능력배양사업을 요청할 때 KOICA가 전달파트너로 지정하게끔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KOICA와 기관의 성격이 비슷한 GIZ의

경우, 전달파트너로서 이미 6개의 국가의 GCF 능력배양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KOICA 역시 기시행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관련 능력배양 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들을 특화시켜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특히 GIZ의 경우 활동 1,2에 특화되어 있는 반면 KOICA 기후변화대응사업은 활동 2, 4, 5로 크게 구분지어볼 수 있는데 이처럼 KOICA 능력배양사업을 특화시킨다면 GIZ 능력배양사업과 차별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예시된 GCF RP처럼 KOICA도 능력배양에 특화된 프로그램 혹은 이니셔티브 개발을 한다면 KOICA의 경험과 전문성을 개도국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KOICA는 GCF 개소 이후 여러 가지 채널과 방법으로 GCF의 활동과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능력배양사업은 향후 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으며 따라서 능력배양사업의 단계서부터 개도국과의 안정적인면서 견고한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따라서 GCF 운영 초기인 현 시점에서 KOICA의 기후변화사업방향은 능력배양사업에 그 중심을 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박형건. 2016. “녹색기후기금(GCF)을 활용한 한국의 기후금융 활성화.” KDB 산업은행 창립 62주년 특집,  
[https://rd.kdb.co.kr/er/wcms.do?actionId=ADERERERWCE95&contentPage=/er/er/er/ERER27I00012\\_01RS\\_DWIFRAME.jsp&cid=20696](https://rd.kdb.co.kr/er/wcms.do?actionId=ADERERERWCE95&contentPage=/er/er/er/ERER27I00012_01RS_DWIFRAME.jsp&cid=20696)
- 홍은경. 2014. “환경 ODA 사업으로의 녹색기후기금 능력배양사업.” 성남:한국국제협력단
- 환경부. 2015. 「국내 환경산업계의 녹색기후기금(GCF) 활용방안 연구」
- GCF. 2013. “Modalities for Readiness and Preparatory Support (GCF/B.05/14).” Incheon: GCF, available from,  
[https://www.greenclimate.fund/documents/20182/24937/GCF\\_B.05\\_14\\_-\\_Modalities\\_for\\_Readiness\\_and\\_Preparatory\\_Support.pdf/414b075c-ec98-4aeb-a102-71ac898d8146?version=1.1](https://www.greenclimate.fund/documents/20182/24937/GCF_B.05_14_-_Modalities_for_Readiness_and_Preparatory_Support.pdf/414b075c-ec98-4aeb-a102-71ac898d8146?version=1.1)
- GCF. 2014. “Detailed Programme of Work on Readiness and Preparatory Support(GCF/B.06/14).” Incheon: GCF, available at [https://www.greenclimate.fund/documents/20182/24940/GCF\\_B.06\\_14\\_-\\_Detailed\\_Programme\\_of\\_Work\\_on\\_Readiness\\_and\\_Preparatory\\_Support.pdf/f787dff8-d825-43a5-80ea-a992877bb1b8?version=1.1](https://www.greenclimate.fund/documents/20182/24940/GCF_B.06_14_-_Detailed_Programme_of_Work_on_Readiness_and_Preparatory_Support.pdf/f787dff8-d825-43a5-80ea-a992877bb1b8?version=1.1)
- GCF. 2015. “Progress Report on the Readiness and preparatory Support Programme(GCF/B.10/Inf.06).” Incheon: GCF, available at [https://www.greenclimate.fund/documents/20182/24952/GCF\\_B.10\\_Inf.06\\_-\\_Progress\\_Report\\_on\\_the\\_Readiness\\_and\\_Preparatory\\_Support\\_Programme.pdf/4063a7df-ef0c-432a-9fdc-36ef0d396591](https://www.greenclimate.fund/documents/20182/24952/GCF_B.10_Inf.06_-_Progress_Report_on_the_Readiness_and_Preparatory_Support_Programme.pdf/4063a7df-ef0c-432a-9fdc-36ef0d396591)
- GCF. 2016a. “Progress and outlook report of the Readiness and Preparatory Support Programme(GCF/B.12/Inf.06).” Incheon: GCF, available at [https://www.greenclimate.fund/documents/20182/184476/GCF\\_B.12\\_11\\_-\\_Progress\\_and\\_outlook\\_report\\_of\\_the\\_Readiness\\_and\\_Preparatory\\_Support\\_Programme\\_Proposal\\_from\\_the\\_Co-Chairs.pdf/f611b706-8dbc-410a-b73d-dad87fb1e95e?version=1.0](https://www.greenclimate.fund/documents/20182/184476/GCF_B.12_11_-_Progress_and_outlook_report_of_the_Readiness_and_Preparatory_Support_Programme_Proposal_from_the_Co-Chairs.pdf/f611b706-8dbc-410a-b73d-dad87fb1e95e?version=1.0)

- GCF. 2016b. “Project Preparation Facility(GCF/B.12/09).” Incheon: GCF, available at [https://www.greenclimate.fund/documents/20182/184476/GCF\\_B.12\\_09\\_-\\_Project\\_Preparation\\_Facility.pdf/36dfbde9-bbee-4f7d-b26f-e61eb1649f1a](https://www.greenclimate.fund/documents/20182/184476/GCF_B.12_09_-_Project_Preparation_Facility.pdf/36dfbde9-bbee-4f7d-b26f-e61eb1649f1a)
- GCF. 2016c. “Progress and outlook report of the Readiness and Preparatory Support Programme(GCF/B.13/24).” Incheon: GCF, available at [http://www.greenclimate.fund/documents/20182/226888/GCF\\_B.13\\_24\\_-\\_Progress\\_and\\_outlook\\_report\\_of\\_the\\_Readiness\\_and\\_Preparatory\\_Support\\_Programme.pdf/ba611e9a-d890-4964-8a45-2e4896341059](http://www.greenclimate.fund/documents/20182/226888/GCF_B.13_24_-_Progress_and_outlook_report_of_the_Readiness_and_Preparatory_Support_Programme.pdf/ba611e9a-d890-4964-8a45-2e4896341059)
- GCF. 2016d.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Project Preparation Facility(GCF/B.13/14).” Incheon: GCF, available at [http://www.greenclimate.fund/documents/20182/226888/GCF\\_B.13\\_14\\_-\\_Operational\\_guidelines\\_for\\_the\\_Project\\_Preparation\\_Facility.pdf/5d6bfb4f-a688-45bc-89f5-655519bec625](http://www.greenclimate.fund/documents/20182/226888/GCF_B.13_14_-_Operational_guidelines_for_the_Project_Preparation_Facility.pdf/5d6bfb4f-a688-45bc-89f5-655519bec625)
- GCF. 2016e. “Accessing the GCF Readiness and Preparatory Support Programme—An introduction and how-to.” Incheon: GCF, available at [http://www.greenclimate.fund/documents/20182/104167/Readiness\\_and\\_Preparatory\\_Support\\_Guidebook.pdf/9eea580f-a109-4d90-b281-c54695114772](http://www.greenclimate.fund/documents/20182/104167/Readiness_and_Preparatory_Support_Guidebook.pdf/9eea580f-a109-4d90-b281-c54695114772)

## 부록

### 〈부록 1〉 개도국의 NDA 및 국가접촉창구 (2016년 8월 현재)

|    | Country                  | National Designated Authority(NDA)                                                                                      |
|----|--------------------------|-------------------------------------------------------------------------------------------------------------------------|
| 1  | Afghanistan              | 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 2  | Albania                  | Ministry of Environment                                                                                                 |
| 3  | Algeria                  | Ministry for Water Resources and Environment                                                                            |
| 4  | Antigua and Barbuda      | Department of Environment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the Environment                                                 |
| 5  | Argentina                | Dirección Nacional de Proyectos con Organismos Internacionales de Crédito,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Públicas   |
| 6  | Armenia                  | Ministry of Nature Protection                                                                                           |
| 7  | Bahamas                  | Ministry of the Environment Housing                                                                                     |
| 8  | Bangladesh               | Economic Relations Division, Ministry of Finance                                                                        |
| 9  | Barbados                 |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Affairs                                                                                |
| 10 | Belarus                  |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
| 11 | Belize                   |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
| 12 | Benin                    | Ministry of Environment in Charge of Climate Change, Reforestation and the Protec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Forestry |
| 13 | Bhutan                   | Gross National Happiness Commission                                                                                     |
| 14 | Bolivia                  |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
| 15 | Bosnia and Herzegovnia   | Ministry of Physical Planning, Civil Engineering and Ecology                                                            |
| 16 | Botswana                 | Department of Meteorological Services                                                                                   |
| 17 | Brazil                   | Secretariat for International Affairs, Ministry of Finance                                                              |
| 18 | Burkina Faso             |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 19 | Burundi                  | Ministry of Finances and Economic Development Planning                                                                  |
| 20 | Cambodia                 | Ministry of Environment                                                                                                 |
| 21 | Cameroon                 | Ministry of Environment, Protection of Na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INEPDED)                                    |
| 22 | Central African Republic | Cross-sectoral team as represen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colo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 23 | Chad                     | Ministry of Agriculture and Environment                                                                                 |

|    |                                  |                                                                                            |
|----|----------------------------------|--------------------------------------------------------------------------------------------|
| 24 | Chile                            | Ministry of Finance                                                                        |
| 25 | China                            | Ministry of Finance (MOF) and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            |
| 26 | Colombia                         | Departamento Nacional de Planeación                                                        |
| 27 | Comoros                          | Ministry of Production, Environment, Energy, Industry and Hadicrafts                       |
| 28 | Cook Islands                     | Climate Change Cook Islands Division                                                       |
| 29 | Costa Rica                       | Ministry of Environment and Energy                                                         |
| 30 | Cote d'Ivoire                    | Bureau of Climate Chang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 31 | Cuba                             |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
| 32 |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 Coordination Nationale du Fonds Vert pour le Climat                                        |
| 33 | Djibouti                         | Ministry of Housing, Urban Development and Environment                                     |
| 34 | Dominica                         | Ministry of Finance                                                                        |
| 35 | Dominican Republic               | Ministry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
| 36 | Ecuador                          | Ministry of Environment of Ecuador                                                         |
| 37 | Egypt                            | Ministry of Environ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xternal Affairs                   |
| 38 | El Salvador                      | Ministry of Development Cooperation                                                        |
| 39 | Equatorial Guinea                | Ministry of Fisheries and Environment                                                      |
| 40 | Eritrea                          | Ministry of Land, Water and Environment                                                    |
| 41 | Ethiopia                         | 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s and Climate Change                                        |
| 42 | Fiji                             | Ministry of Finance                                                                        |
| 43 | Gabon                            | Conseil National Climat                                                                    |
| 44 | Gambia                           |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Affairs                                                   |
| 45 | Georgia                          | Ministry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Protection                                   |
| 46 | Ghana                            | Ministry of Finance                                                                        |
| 47 | Grenada                          |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Planning, Trade, Cooperatives and International Business |
| 48 | Guatemala                        | Ministry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
| 49 | Guinea                           | National Direction for Environment                                                         |
| 50 | Guinea Bissau                    | Secretariat of State of the Environment/ General Direction of the Environment              |
| 51 | Guyana                           | Ministry of the Presidency                                                                 |
| 52 | Haiti                            | Ministry of Environment                                                                    |

|    |                                     |                                                               |
|----|-------------------------------------|---------------------------------------------------------------|
| 53 | Honduras                            | Ministry of Energy, Natural Resources, Environment and Mining |
| 54 | India                               | 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s and Climate Change           |
| 55 | Indonesia                           | Fiscal Policy Agency, Ministry of Finance                     |
| 56 | Iran                                | Department of Environment for Human Environment               |
| 57 | Jamaica                             | Ministry of Water, Land, Environment & Climate Change         |
| 58 | Jordan                              | Ministry of Environment                                       |
| 59 | Kazakhstan                          | Climate Change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Energy           |
| 60 | Kenya                               | The National Treasury                                         |
| 61 | Kiribati                            | Ministry of Finance & Economic Development                    |
| 62 | Korea                               |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
| 63 | Kosovo                              | Ministry of Environment and Spatial Planning                  |
| 64 | Kyrgyz Republic                     | State Agency on Environment Protection and Forestry           |
| 65 | Lao PDR                             |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
| 66 | Lebanon                             | Ministry of Environment                                       |
| 67 | Lesotho                             | Ministry of Energy, Meteorology and Water Affairs             |
| 68 | Liberia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 69 | Libya                               | Libyan National Climate Change Committee                      |
| 70 | Madagascar                          | Ministry of Environment, Ecology, and Forestry                |
| 71 | Malawi                              | Environmental Affairs Department                              |
| 72 | Malaysia                            |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
| 73 | Maldives                            | Ministry of Environment and Energy                            |
| 74 | Mali                                |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gency            |
| 75 | Marshall Islands                    | Office of Environmental Planning & Policy Coordination        |
| 76 | Mauritania                          | Ministère de l'Environnement et du Développement Durable      |
| 77 | Mauritius                           |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
| 78 | Mexico                              | Ministry of Finance                                           |
| 79 | Micronesia<br>(Federated States of) | Department of Finance and Administration                      |
| 80 | Moldova                             | Ministry of Environment                                       |
| 81 | Mongolia                            | Ministry of Environment, Green Development and Tourism        |
| 82 | Montenegro                          | Ministry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urism               |
| 83 | Morocco                             | Ministry of Energy, Mining, Water and Environment             |

|     |                                  |                                                                               |
|-----|----------------------------------|-------------------------------------------------------------------------------|
| 84  | Mozambique                       | Ministry of Land, Environment and Rural Development                           |
| 85  | Myanmar                          | Ministry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Forestry                           |
| 86  | Namibia                          |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ourism                                           |
| 87  | Nauru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 88  | Nepal                            |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Coordination Division, Ministry of Finance |
| 89  | Nicaragua                        | Ministerio del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
| 90  | Niger                            | National Council of the Environ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 91  | Nigeria                          | Federal Ministry of Environment                                               |
| 92  | Niue                             | Ministry of Finance                                                           |
| 93  | Oman                             | Ministry of Environment and Climate Affairs                                   |
| 94  | Pakistan                         | Ministry of Climate Change                                                    |
| 95  | Palau                            | Palau National Grant Office                                                   |
| 96  | Panama                           | National Environmental Authority of Panama                                    |
| 97  | Papua New Guinea                 |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 Authority                                      |
| 98  | Paraguay                         | Ministry of Planning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
| 99  | Peru                             |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 100 | Philippines                      | Climate Change Commission                                                     |
| 101 | Republic of Congo                | Ministère du Tourisme et de l'Environnement                                   |
| 102 | Rwanda                           | Rwanda Environment Management Authority                                       |
| 103 | Saint Kitts and Nevis            | Department of Physical Planning and Environment                               |
| 104 | Saint Lucia                      | Ministry of Finance, Economic Affairs and Social                              |
| 105 |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                                     |
| 106 | Samoa                            | Ministry of Finance                                                           |
| 107 | Sao Tome and Principe            |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
| 108 | Saudi Arabia                     | Ministry of Petroleum and Mineral Resources                                   |
| 109 | Senegal                          | Ministry of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 110 | Serbia                           | Ministry of Agricultur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
| 111 | Seychelles                       | Seychelles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Inter-sectoral Steering Committee |
| 112 | Sierra Leone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 113 | Singapore                        | National Climate Change Secretariat                                           |

|     |                 |                                                                                                                      |
|-----|-----------------|----------------------------------------------------------------------------------------------------------------------|
| 114 | Solomon Islands | Ministry of Environment, Climate Change, Disaster Management and Meteorology                                         |
| 115 | Somalia         | Ministry of State for Environment                                                                                    |
| 116 | South Africa    |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                                                                                  |
| 117 | Sri Lanka       | Ministry of Mahaweli Development and Environment                                                                     |
| 118 | South Sudan     | Ministry of Environment                                                                                              |
| 119 | Sudan           | The Higher Council for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
| 120 | Suriname        | Ministry of Finance                                                                                                  |
| 121 | Swaziland       | Ministry of Tourism and Environmental Affairs                                                                        |
| 122 | Syria           | Ministry of State for Environment Affairs                                                                            |
| 123 | Tajikistan      | Committee on Environmental Protection                                                                                |
| 124 | Tanzania        | The Office of Vice President                                                                                         |
| 125 | Thailand        | Office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Policy and Planning                                                    |
| 126 | Timor-Leste     | National Directorate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 Affairs                                                           |
| 127 | Togo            | Directorate of Environment, Ministry of Environment                                                                  |
| 128 | Tonga           | Ministry for Meteorology, Energy, Information, Disaster Management, Environment, Climate Change and Communications   |
| 129 | Tunisia         | Ministry of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 130 | Turkey          | Undersecretariat of Treasury                                                                                         |
| 131 | Turkmenistan    | Ministry of Nature Protection                                                                                        |
| 132 | Tuvalu          | Government of Tuvalu                                                                                                 |
| 133 | Uganda          | Ministry of Finance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
| 134 | Ukraine         | Ministry of Ecology and Natural Resources of Ukraine                                                                 |
| 135 | Uruguay         | Unidad de Relacionamento con Organismos Multilaterales                                                               |
| 136 | Uzbekistan      | Centre of Hydrometeorological Service                                                                                |
| 137 | Vanuatu         | Ministry of Climate Change, Change Adaptation, Meteorology, Geo-Hazards, Environment, Energy and Disaster Management |
| 138 | Viet Nam        |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
| 139 | Yemen           | Environment Protection Authority                                                                                     |
| 140 | Zambia          | National Planning Department, Ministry of Finance                                                                    |
| 141 | Zimbabwe        | Climate Change Management Department, Ministry of Environment, Water&Climate                                         |

[http://www.greenclimate.fund/documents/20182/318991/NDA\\_and\\_Focal\\_Point\\_nominations\\_for\\_the\\_Green\\_Climate\\_Fund.pdf/eeace75b-aa59-489c-8914-c0940debe01f](http://www.greenclimate.fund/documents/20182/318991/NDA_and_Focal_Point_nominations_for_the_Green_Climate_Fund.pdf/eeace75b-aa59-489c-8914-c0940debe01f)

〈부록 2〉 2016년 6월 기준, 승인된 능력배양지원

|    | Country                             | Activity area | Delivery partner/<br>service provider                                    | Access type   | Amount<br>(USD) | Duration<br>(months) |
|----|-------------------------------------|---------------|--------------------------------------------------------------------------|---------------|-----------------|----------------------|
| 1  | Antigua and Barbuda                 | 1+2           | Ministry of Health and Environment                                       | Direct        | 300,000         | 12                   |
| 2  | Bangladesh                          | 2             | UNDP                                                                     | International | 150,000         | 12                   |
| 3  | Benin                               | 1             | UNEP                                                                     | International | 150,000         | 24                   |
|    |                                     | 3             | PwC                                                                      | na            | 37,000          | —                    |
| 4  | Bolivia<br>(Plurinational State of) | 1+2           |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 Direct        | 300,000         | 24                   |
| 5  | Brazil                              | 3             | PwC                                                                      | na            | 37,000          | —                    |
| 6  | Cambodia                            | 3             | PwC                                                                      | na            | 37,000          | —                    |
| 7  | Central African Republic            | 1+2           | UNDP                                                                     | International | 300,000         | 12                   |
| 8  | Chad                                | 1+2           | UNDP                                                                     | International | 300,000         | 24                   |
| 9  | Chile                               | 1+2           | Chil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AGCI)                           | Direct        | 300,000         | 12                   |
| 10 | Colombia<br>(2 entities)            | 3             | PwC                                                                      | na            | 74,000          | —                    |
| 11 | Comoros                             | 1+2           | UNEP                                                                     | International | 300,000         | 24                   |
| 12 | Cook Islands                        | 1             |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Management                              | Direct        | 150,000         | 12                   |
| 13 | Costa Rica                          |               | UNDP                                                                     | International | 300,000         | 12                   |
| 14 | Côte d'Ivoire                       |               | UNDP                                                                     | International | 300,000         | 24                   |
| 15 |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               | CSE                                                                      | Direct        | 300,000         | 24                   |
| 16 | Djibouti                            |               | CSE                                                                      | Direct        | 300,000         | 24                   |
| 17 | Dominican Republic                  | 1+2           | UNDP                                                                     | International | 300,000         | 12                   |
| 18 | El Salvador                         | 1+2           | Deputy Ministr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Direct        | 300,000         | 18                   |
| 19 | Ethiopia                            | 1+2           |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Cooperation                             | Direct        | 300,000         | 24                   |
| 20 | Gabon                               | 1+2           | CDC-Gabon                                                                | Direct        | 300,000         | 12                   |
| 21 | Guatemala                           | 1+2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 International | 300,000         | 12                   |

|    |                                                     |     |                                              |               |         |    |
|----|-----------------------------------------------------|-----|----------------------------------------------|---------------|---------|----|
| 22 | Guyana                                              | 1+2 | Caribbean Community Climate Change Centre    | Direct        | 300,000 | 12 |
| 23 | Guinea                                              | 1+2 | UNDP                                         | International | 300,000 | 24 |
| 24 | Honduras<br>(2 entities)                            | 1+2 | UNDP                                         | International | 300,000 | 12 |
|    |                                                     | 3   | PwC                                          | na            | 74,000  | —  |
| 25 | India                                               | 1+2 | UNDP                                         | International | 300,000 | 12 |
| 26 | Kenya                                               | 1   | Kenya National Treasury                      | Direct        | 150,000 | 12 |
|    |                                                     | 3   | PwC                                          | na            | 37,000  | —  |
| 27 | Liberia                                             | 1+2 | UNDP                                         | International | 300,000 | 24 |
| 28 | Mali                                                | 1+2 | Sahel Eco                                    | Direct        | 300,000 | 24 |
| 29 | Mauritius                                           | 1+2 |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 Direct        | 300,000 | 12 |
| 30 | Mexico                                              | 3   | PwC                                          | na            | 37,000  | —  |
| 31 | Micronesia<br>(Federated States of)<br>(2 entities) | 1+2 |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 Direct        | 300,000 | 24 |
|    |                                                     | 3   | PwC                                          | na            | 74,000  | —  |
| 32 | Mongolia                                            | 1+2 | GIZ                                          | International | 300,000 | 12 |
| 33 | Niue                                                | 3   | PwC                                          | na            | 37,000  | —  |
| 34 | Pakistan                                            | 1+2 | GIZ                                          | International | 300,000 | 6  |
|    |                                                     | 3   | PwC                                          | na            | 37,000  | —  |
| 35 | Palau                                               | 3   | PwC                                          | na            | 37,000  | —  |
| 36 | Peru                                                | 1+2 | GIZ                                          | International | 300,000 | 6  |
| 37 | Philippines                                         | 1+2 | Climate Change Commission                    | Direct        | 300,000 | 12 |
| 38 | Republic of Congo                                   | 1+2 | UNDP                                         | International | 300,000 | 24 |
| 49 | Rwanda                                              | 1+2 |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Fund          | Direct        | 300,000 | 12 |
| 40 | Senegal                                             | 1+2 | CSE                                          | Direct        | 300,000 | 18 |
|    |                                                     | 4   | IFC                                          | International | 600,000 | 12 |
| 41 | Seychelles                                          | 3   | PwC                                          | na            | 37,000  | —  |
| 42 | Swaziland                                           | 1+2 | UNDP                                         | International | 300,000 | 18 |
| 43 | Thailand                                            | 1   | GIZ                                          | International | 102,000 | 6  |
| 44 | Timor Leste                                         | 1+2 | UNDP                                         | International | 300,000 | 24 |
| 45 | Togo                                                | 1+2 | CSE                                          | Direct        | 300,000 | 24 |

|    |                             |     |                                                           |               |                   |    |
|----|-----------------------------|-----|-----------------------------------------------------------|---------------|-------------------|----|
| 46 | Tunisia                     | 1+2 | The Sahara and Sahel Observatory                          | Direct        | 300,000           | 24 |
| 47 | United Republic of Tanzania | 1+2 |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                 | Direct        | 300,000           | 12 |
| 48 | Vanuatu                     | 1+2 | GIZ                                                       | International | 300,000           | 24 |
|    |                             | 4   | Secretariat of the Pacific Regional Environment Programme | Direct        | 137,000           | 5  |
| 49 | Zambia                      | 1+2 | Ministry of Finance                                       | Direct        | 300,000           | 24 |
|    |                             |     |                                                           | <b>Total</b>  | <b>13,094,000</b> |    |

Abbreviations: CSE = Le Centre de Suivi Ecologique, GIZ =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mbH, NDA = national designated authority, PwC = Pricewaterhouse Coopers, UND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EP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출처: GCF (2016c)

### 〈부록 3〉 이행기구 승인현황 (2016년 8월 현재)

|                |            |                                                                                                                                                                                                                                                                                                                                                                                                                                                                                                                                                                                                                                                                                                                                                                                                                                                                                                                                                                                                                                                                                                               |
|----------------|------------|---------------------------------------------------------------------------------------------------------------------------------------------------------------------------------------------------------------------------------------------------------------------------------------------------------------------------------------------------------------------------------------------------------------------------------------------------------------------------------------------------------------------------------------------------------------------------------------------------------------------------------------------------------------------------------------------------------------------------------------------------------------------------------------------------------------------------------------------------------------------------------------------------------------------------------------------------------------------------------------------------------------------------------------------------------------------------------------------------------------|
| 직접<br>(Direct) | 국내<br>(9개) | 모로코 농업개발청 (Agency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of Morocco, ADA)<br>세네갈 개발기관 (Centre de Suivi Ecologique, CSE)<br>나미비아 환경투자기금 (Environmental Investment Fund, EIF)<br>에티오피아 재정경제협력부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Cooperation of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MOFEC)<br>르완다 자연자원부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of Rwanda, MINIRENA)<br>인도 농업농촌개발은행 (National Bank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NABARD)<br>케냐 국립환경관리청 (National Environment Management Authority of Kenya, NEMA)<br>페루환경보호기금 (Peruvian Trust Fund for National Parks and Protected Areas, Profonampe)<br>아르헨티나 농촌개발공사 (Unidad Para el Cambio Rural (Unit for Rural Change) of Argentina, UCAR)                                                                                                                                                                                                                                                                                                                                                                                                                  |
|                | 지역<br>(5개) | 아큐먼펀드 (Acumen Fund, Inc.)<br>캐리비안 기후변화센터 (Caribbean Community Climate Change Centre, CCCCC)<br>중남미개발은행 (Corporación Andina de Fomento, CAF)<br>남아프리카개발은행 (Development Bank of Southern Africa, DBSA)<br>태평양환경계획사무국 (Secretariat of the Pacific Regional Environment Programme, SPREP)                                                                                                                                                                                                                                                                                                                                                                                                                                                                                                                                                                                                                                                                                                                                                                                                                         |
| 국외<br>(19개)    |            | 아프리카금융공사 (Africa Finance Corporation, AFC)<br>아프리카개발은행 (African Development Bank, AfDB)<br>프랑스개발청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br>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ADB)<br>컨서베이션 인터네셔널 (Conservation International Foundation, CI)<br>크레딧 아그리콜 (Crédit Agricole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 CA-CIB)<br>도이체방크 (Deutsche Bank Aktiengesellschaft, Deutsche Bank AG)<br>유럽부흥개발은행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br>유럽투자은행 (European Investment Bank, EIB)<br>홍콩상하이은행 (HSBC Holdings plc and its subsidiaries, HSBC)<br>미주개발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br>세계은행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World Bank)<br>국제금융공사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br>세계자연보전연맹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br>독일부흥은행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br>UN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br>UN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br>세계식량계획 (World Food Programme, WFP)<br>세계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

출처: GCF 홈페이지(<http://www.greencclimate.fund/partners/accredited-entities>)

〈부록 4〉 이 외 기구들의 사업준비지원(Project Preparation Support) 형태

| 이행기구                                              | 적합성                                                   | 사업준비금융(PPF) 수여 한도 (USD)                                                                                                                                                                                                                                     | 프로젝트타입               | 승인 기관     | 승인 절차                                                     | 초기 자본 (USD)        |
|---------------------------------------------------|-------------------------------------------------------|-------------------------------------------------------------------------------------------------------------------------------------------------------------------------------------------------------------------------------------------------------------|----------------------|-----------|-----------------------------------------------------------|--------------------|
| 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 공인된 모든 다자간/지역간 이행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1million한도 프로젝트에 \$50,000</li> <li>• 예산\$3million한도 프로젝트에 \$100,000</li> <li>• 예산\$6million한도 프로젝트에 \$150,000</li> <li>• 예산\$10million한도 프로젝트에 \$200,000</li> <li>• 예산\$10million초과 프로젝트에 \$300,000</li> </ul> | 기후환경<br>친화적<br>프로젝트  | 사무국       | 승인 요구는<br>사업계획서/<br>사업신청서에<br>포함할 것                       | 한도 표기되어<br>있지 않음   |
| Adaptation Fund                                   | 직접적 접근을 통해<br>공인된 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e concept: 각 프로젝트 당 \$20,000까지</li> <li>• Concept stage: 각 프로젝트 당 \$80,000까지</li> </ul>                                                                                                                          | 공공부문<br>기후적응<br>프로젝트 | 이사회       | 승인 요구는<br>사업계획서/<br>사업신청서에<br>포함 할 것                      | USD<br>100,000     |
| Clean Technology Fund (CTF)                       | 다자개발은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프로젝트 당 \$1million까지</li> </ul>                                                                                                                                                                                   | 민관<br>기후 완화<br>프로젝트  | 기금<br>위원회 | 청정기술기금의<br>준비중여금 요구는<br>기금위원회에게<br>지원 마감일 없이<br>수시제출 가능 함 | 한도 표기되어<br>있지 않음   |
| Global Infrastructure Facility (World Bank Group) | 아시아개발은행;<br>유럽부흥개발은행;<br>유럽투자은행;<br>미주개발은행;<br>세계은행그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준비금융으로 수여된 가장 큰 금액은 \$5million</li> </ul>                                                                                                                                                           | 대규모<br>인프라<br>사업     | 정책<br>이사회 | 사업준비금융 지원서<br>그리고 사업계획서<br>개요를 각각 제출할 것                   | USD<br>100 million |

출처: GCF (2016d)

##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은 1991년 4월 설립된 정부 차원의 대외무상협력 전담 기관입니다.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등 5대 중점 분야에서 제도구축, 인적자원 양성,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학교·병원·직업훈련원 등 710여건의 프로젝트 사업, 1만여명의 해외 봉사단 파견, 40,000여명의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620여건의 NGO와의 협력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수행 시 환경 및 양성평등, 인권 등의 가치를 고려하여 개발과 인간다운 삶이 공존하는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원조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OICA는 지구촌 행복시대 실천에 앞장섬으로써 개도국의 발전과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 KOICA 연구개발팀(Research & Development Office)

---

KOICA 연구개발팀은 한국 ODA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OECD/DAC(개발원조 위원회)에 가입하고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국제개발협력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KOICA 연구개발팀은 그러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적인 ODA 흐름에 적극 부응하면서도 우리 나라의 강점을 잘 조화시킨 바람직한 개발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KOICA 연구개발팀은 그동안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실정에 맞는 실용적인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개도국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ODA를 선진화 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 2015년도 KOICA 연구보고서

---

- SDGs 수립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 OECD DAC 개발협력 주요이슈 논의동향과 한국국제개발협력 전략 연계방안
- 신흥공여국의 ODA 정책과 배분 연구 1: 체코
- 신흥공여국의 ODA 정책과 배분 연구 2: 폴란드
- 신흥공여국의 ODA 정책과 배분 연구 3: 아이슬란드
- 신흥공여국의 ODA 정책과 배분 연구 4: 슬로베니아
- 신흥공여국의 ODA 정책과 배분 연구 5: 슬로바키아
- 신흥공여국의 ODA 정책과 배분 연구 6: 터키
- 정치경제분석(PEA)를 통한 국별지원전략 (CPS) 개선방안 연구
- 무상원조의 경제성 효과 분석
- Post-2015 체제의 ODA 정의 현대화와 총공적개발지원 분석
- Post-2015 체제의 개발재원 논의 분석
- 개발협력사업 성과의 계량화 사례 연구: 표준지표(수혜자수)를 중심으로
- PBA와 수원국 시스템 활용 연구
-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에 대한 논의동향 및 개도국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분쟁 및 취약국 지원현황 분석: 뉴딜이행현황 중심으로
- 사회적 경제접근법을 활용한 민관협력 사업혁신 방안
- WFK 봉사단 사업성과 평가 및 성과지표 개발 연구
-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운영체계 및 법적 기반에 대한 연구
-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MOPAN] 주요 문헌 분석 및 자문

연구자료 연구개발 2016-60-127

---

GCF 능력배양사업 분석 및 KOICA 기후변화사업 적용가능성 연구

---

|   |     |                                                             |
|---|-----|-------------------------------------------------------------|
| 발 | 행   | 2016년 10월                                                   |
| 발 | 행   | 인 김인식                                                       |
| 발 | 행   | 처 한국국제협력단                                                   |
| 편 | 집   | 인 연구개발팀                                                     |
| 주 |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우: 13449)                             |
| 전 | 화   | 031)740-0114                                                |
| 팩 | 스   | 031)740-0655                                                |
| 홈 | 페이지 | <a href="http://www.koica.go.kr">http://www.koica.go.kr</a> |
| 인 | 쇄   | 다인스케치                                                       |

[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연구자료

연구개발 2016-06-127

ISBN 978-89-6469-383-4 93320



GCF 능력배양사업 분석 및  
KOICA 기후변화사업 적용가능성 연구



**KOICA** 한국국제협력단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Tel. 031-740-0114 Fax. 031-740-0655  
<http://www.koica.go.kr>